

2022학년도

입학 전 예비과정 자료집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WONKWANG UNIVERSITY LAW SCHOOL

● 차 례 ●

I. 입학 전 예비과정 (취소됨)	1
II. 법학전문대학원 안내 및 수강신청	2
III. 학사안내	15
IV.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현황	22
V. 원광대학교 캠퍼스 안내 및 연혁	24
VI. 교육과정 안내	32
VII. 관련규정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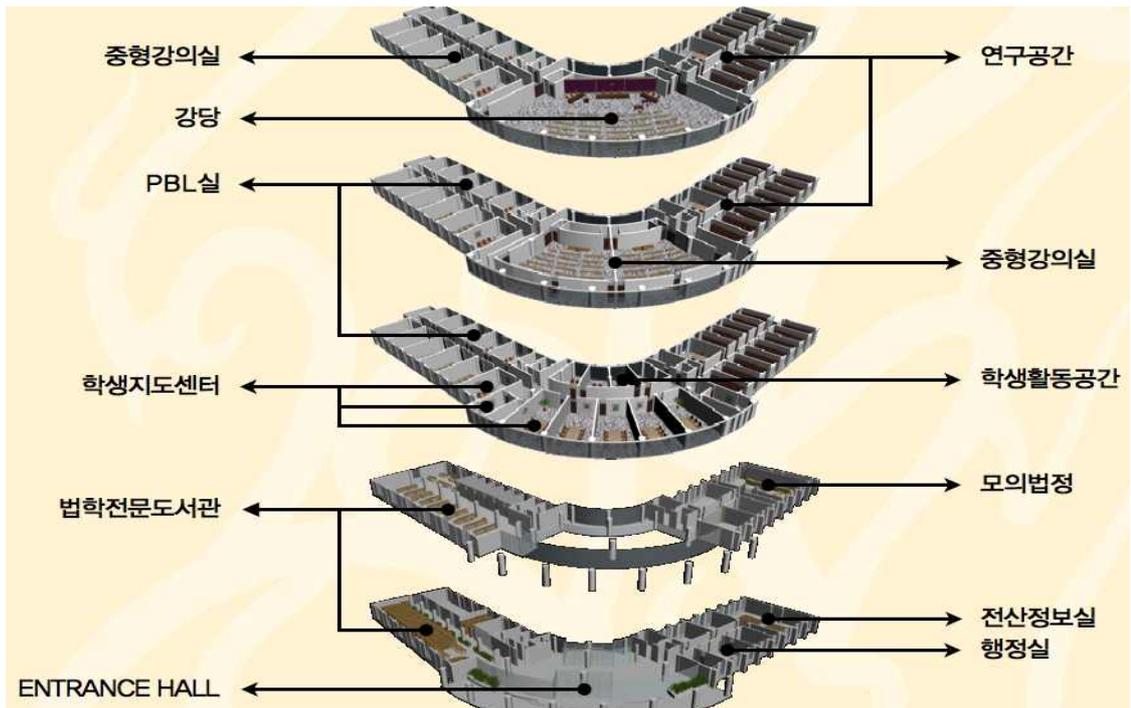
I. 입학 전 예비과정 (취소)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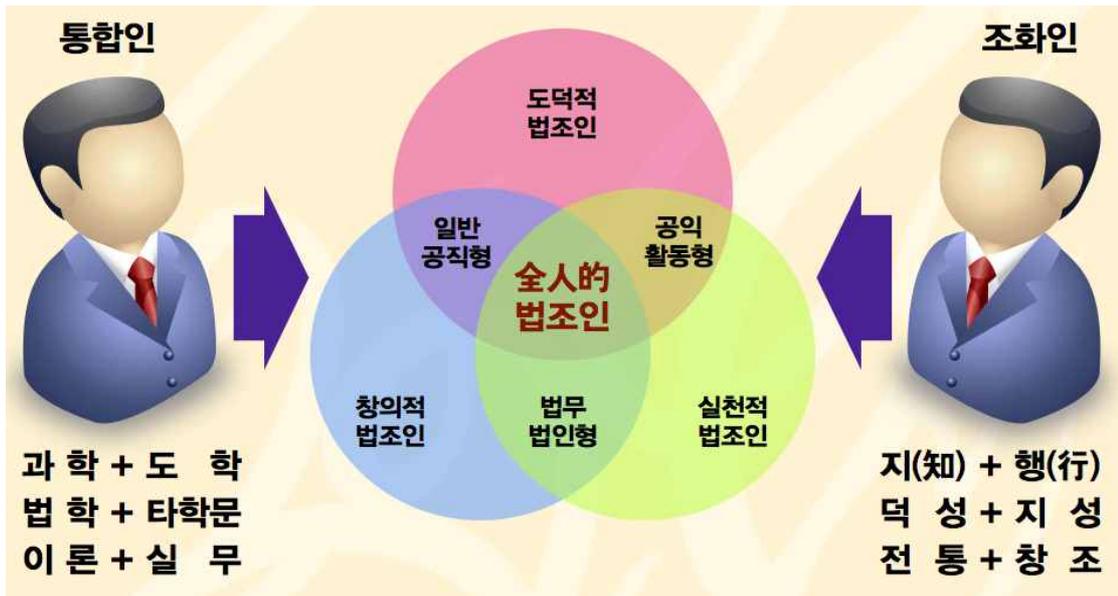
※ 수강신청 및 기숙사 안내 : 추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정 안내(신입생 수강신청은 최종등록자의 확정인 2월 2일(화)이후 진행 예정)

II. 법학전문대학원 안내 및 수강신청

1. 시설 안내



2. 법학전문대학원이 지향하는 인재상



3.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목표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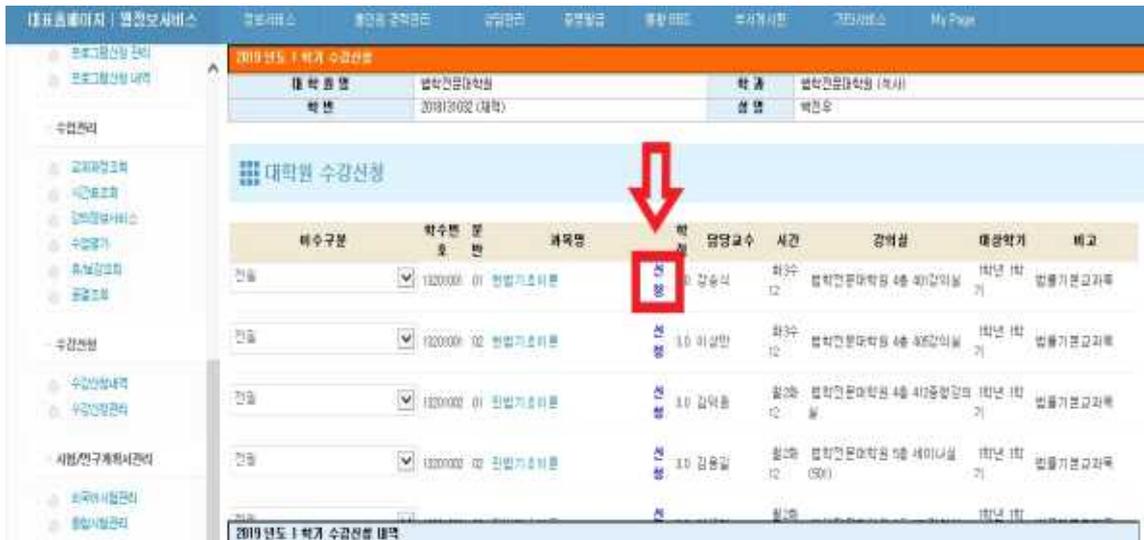
4. 수강신청 안내



① 원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웹정보서비스”를 클릭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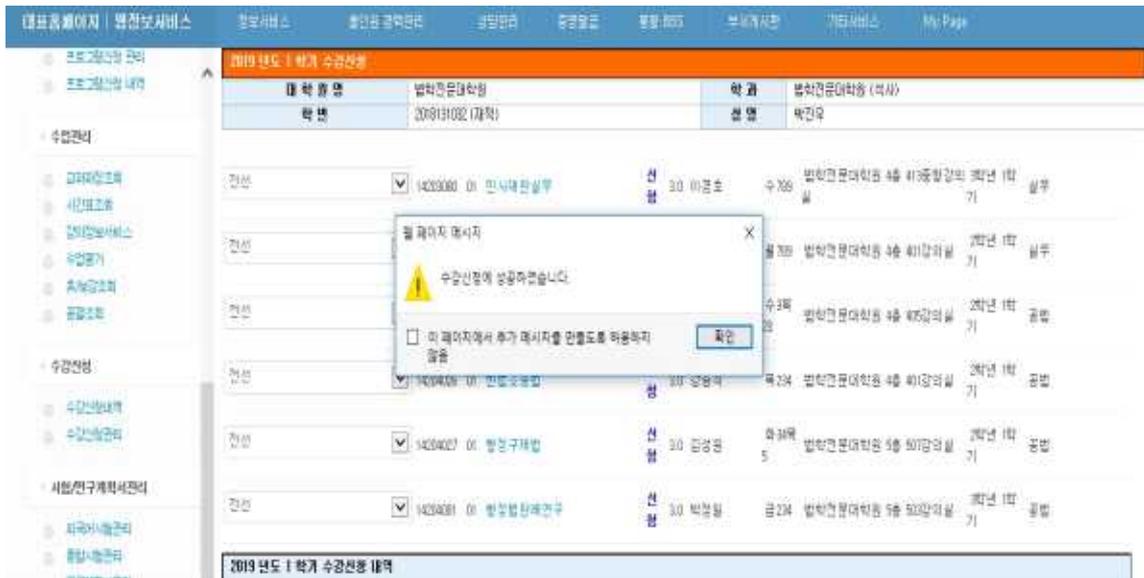
② 신규가입 후 학생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 합니다.



- ⑤ 교과목들이 등장 합니다.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과목의 “신청” 을 클릭하면 됩니다.



- ⑥ 확인을 누르세요.



⑦ 수강신청에 성공하였습니다.



⑧ 하단에 있는 “2021년도 1학기 수강신청 내역”에서 수강신청 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홈페이지 | 등록보서비스 | 정보서비스 | 출결명 검색관리 | 수강신청 | 증명발급 | 생활 885 | 복지서비스 | 기타서비스 | My Page

2019년도 1학기

대학명	법학전문대학원	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각과)
학번	201813182 (재학)	성명	박강주

2019년도 1학기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분반	학점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비고
전필	18201823	상법거소이론	00	3.0	문장복	월/화/2	법학전문대학원 4층 413동철강의실	법률거문교과목
전선	14204025	헌법특강	01	3.0	이창석	수/목/2	법학전문대학원 4층 405동철강의실	공법
전선	14204027	행정구체법	01	3.0	김성훈	화/목/5	법학전문대학원 5층 507동철강의실	공법
전선	14206829	민법거소판술	01	3.0	조준환	금/2/4	법학전문대학원 4층 413동철강의실	민사법
전선	14206830	민사증거법	01	3.0	최정환	수/1/목/1	법학전문대학원 5층 503동철강의실	민사법
전선	14206834	형사증거법	01	3.0	황민성	화/8/수/7	법학전문대학원 4층 412동철강의실	형사법
전선	14207336	기업금융법	01	3.0	김희철	화/5/수/4	법학전문대학원 4층 405동철강의실	상사법

- ⑨ 수강신청을 완료한 후 좌측 메뉴에서 “수강신청 내역”을 클릭하시면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5. 2022학년도 1학년 1학기 수강신청 시간표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09:00 ~ 09:50		헌법1 (전정환/강승식)	형법총론 (윤상민/홍승희/홍태석)		
2 10:00 ~ 10:50	법률정보조사 (유수연/정아영)		형법총론 (윤상민/홍승희/홍태석)	민법2 (김덕중)	
3 11:00 ~ 11:50	법조윤리 (유수연/정아영)	민법3 (이재경/이혜리)	민법2 (김덕중/이혜리/이재경)	민법2 (김덕중/이혜리/이재경)	
4 12:00 ~ 12:50		민법3 (이재경/이혜리)	민법2 (이혜리/이재경)	민법1 (최단비)	
5 13:00 ~ 13:50	헌법1 (전정환/강승식)				
6 14:00 ~ 14:50	헌법1 (전정환/강승식)	형법총론 (윤상민/홍승희/홍태석)	민법1 (최단비)	민법3 (이재경/이혜리)	
7 15:00 ~ 15:50		법학방법론 (이계일)	민법1 (최단비)	의생명윤리와 법 (황만성)	
8 16:00 ~ 16:50		법학방법론 (이계일)	의생명윤리와 법 (황만성) 과학기술과 법 (김은진)	의생명윤리와 법 (황만성)	
9 17:00 ~ 17:50			과학기술과 법 (김은진)	과학기술과 법 (김은진)	

[2022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개설강좌 리스트]

학수번호	학기	구분	과목명	영문명	분야	학점
13201005	1/1	전공필수	헌법1	Constitutional Law 1	법률기본교과목	3
14205019	1/1	전공선택	민법1	Civil Law 1	민사법	3
13201007	1/1	전공필수	민법2	Civil Law 2	법률기본교과목	3
14205020	1/1	전공선택	민법3	Civil Law 3	민사법	3
13201004	1/1	전공필수	형법총론	General Part of Criminal Law	법률기본교과목	3
13102013	1/1	전공필수	법조윤리	Legal Ethics	실무필수	1
13202013	1/1	전공필수	법률정보조사	Legal Research	실무필수	1
14208007	1/1	전공선택	법학방법론	Legal Methodology	기초법	2
14209009	1/1	전공선택	의생명윤리와 법	Biomedical Ethics & Law	특성화(의생명과학법)	3
14209037	1/1	전공선택	과학기술과 법	Law and Technology	특성화(의생명과학법)	3
13207069	2/1	전공필수	상법1	Commercial Law 1	법률기본교과목	3
13201013	2/1	전공필수	행정법1	Administrative Law 1	법률기본교과목	3
14203121	2/1	전공선택	경찰실무	Police Practice & Legal Issues	실무	3
14204025	2/1	전공선택	헌법특강	Special lecture in Constitutional Law	공법	3
14204026	2/1	전공선택	헌법소송법	Constitutional Litigation Law	공법	3
14205232	2/1	전공선택	민법5	Civil Law 5	민사법	3
14205032	2/1	전공선택	민사소송법2	Civil Procedure Law 2	민사법	3
14205089	2/1	전공선택	중재법	Arbitration Law	민사법	3
14206032	2/1	전공선택	형법판례연구	Leading Case Study of Criminal Law	형사법	3
14206033	2/1	전공선택	경제형법	Economic Criminal Law	형사법	3
14206036	2/1	전공선택	형사소송법2	Criminal Procedure Law 2	형사법	3
14207036	2/1	전공선택	기업금융법	Company Law and Financial Regulation	상사법	3
14208009	2/1	전공선택	법철학,생명,국가	Legal Philosophy, Bioethics, State	특성화(의생명과학법)	2
14210043	2/1	전공선택	미국법(American Law)	American Law	외국어	3

학수번호	학기	구분	과목명	영문명	분야	학점
14210044	2/1	전공선택	미국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	Uniform Commercial Code	외국어	3
14210045	2/1	전공선택	유엔협약사례연구(CISG Case Studies)	CISG Case Studies	외국어	3
14212044	2/1	전공선택	개별근로관계법	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	노동법	3
14213045	2/1	전공선택	세법총론	General Tax Law	조세법	3
14214047	2/1	전공선택	조약법연구	Studies on the Law of Treaties	국제법	3
14216047	2/1	전공선택	환경법일반	Environmental Law	환경법	3
13202051	3/1	전공필수	실습과정(B)	General Practice Clinic (B)	실무필수	1
13202078	3/1	전공필수	모의재판	Moot Court	실무필수	1
14203079	3/1	전공선택	검찰실무2	Prosecution Practice and Criminal Procedure 2	실무	3
14203080	3/1	전공선택	민사재판실무	Practice of Civil Trials	실무	3
14204058	3/1	전공선택	행정법3	Administrative Law 3	공법	3
14204057	3/1	전공선택	행정법연습	Study of Administrative Law Cases	공법	3
14204084	3/1	전공선택	공법실무	Legal Writing on Public Law	공법	3
14205085	3/1	전공선택	민법종합연습2	Comprehensive Seminar on Civil Law 2	민사법	3
14205091	3/1	전공선택	민사소송법연습	Practice of Civil Procedure	민사법	3
14205088	3/1	전공선택	민사실무2	Practical Civil Law 2	민사법	3
14206095	3/1	전공선택	형사소송법연습	Seminar In Criminal Procedure	형사법	3
14206091	3/1	전공선택	형사법의 쟁점과 사례	Cases and Problems in Criminal Law	형사법	3
14206092	3/1	전공선택	인권보호와 피해자학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Victimology	형사법	3
14206093	3/1	전공선택	형사실무	Criminal Advocacy Practice	형사법	3
14207067	3/1	전공선택	상법3	Negotiable Instruments Law	상사법	3
14207096	3/1	전공선택	국제금융거래법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s: Law and Regulation	상사법	3
14209097	3/1	전공선택	국제생명과학법	International Biotechnology Law	특성화(의생명과학법)	3
14209098	3/1	전공선택	생명의료법세미나	Seminar of Biomedical Law	특성화(의생명과학법)	3
14209069	3/1	전공선택	의료소송실무	Medical Litigation Practice	특성화(의생명과학법)	3

학수번호	학기	구분	과목명	영문명	분야	학점
14208008	3/1	전공선택	비교법	Comparative Law	기초법	3
14210099	3/1	전공선택	International Oil & Gas Transaction	International Oil & Gas Transaction	외국어	2
14212101	3/1	전공선택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Law	노동법	3
14214076	3/1	전공선택	국가책임법연구	Studies on State Responsibility	국제법	3
14217120	3/1	전공선택	경제법	Economic Law	경제법	3

6. 2022학년도 제1학기 학사일정

● 1학기 : 3월 2일(수) 개강 - 6월 10일(금) 종강

학기	일 자	학사 진행 사항
1학기	03.02.(수)	1학기 개강
	03.02.(수) ~ 03.03.(목)	1학년 법학사 학점인정시험 신청서 접수
	03.03.(목) ~ 03.04.(금)	수강신청 변경 및 확인
	03.04.(금)	1학년 법학사 학점인정시험 및 학력진단평가
	03.09.(수)	20대 대통령 선거(휴무일)
	03.14.(월)	2021학년도 동계 실무수습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03.14.(월) ~ 03.16.(수)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Drop기간
	03.14.(월) ~ 03.18.(금)	외국어시험 응시대상자 원서접수(2학기 이상)
	03.21.(월) ~ 03.25.(금)	외국어시험(기간 중 지정 1일 시행)
	03.25.(금)	휴학 및 복학 마감
	03.26.(토) ~ 03.27.(일)	제1차 졸업시험
	04.04.(월) ~ 04.08.(금)	1학기 중간 수업평가(학생)
	04.18.(월) ~ 04.22.(금)	중간고사(수시고사)기간
	04.28.(수)	대각개교절(휴무일)
	05.05.(수)	어린이날(휴무일)
	05.10.(화)~	하계 실무수습 신청접수 시작
	05.23.(월) ~ 05.27.(수)	1학기 기말 수업평가(학생)
	06.01.(수)	육일대제/지방선거(휴무일)
	06.06.(월)	현충일(휴무일)
	06.07.(화) ~ 06.13.(월)	1학기 기말시험 기간
	06.08.(수) ~ 06.15.(수)	1학기 성적입력 기간
	06.10.(금)	1학기 종강
	06.16.(목) ~ 06.20.(월)	성적공지 및 성적이의신청
	06.20.(월) ~ 06.24.(금)	제1차 졸업시험[변호사시험 모의시험]<휴식일 06.22.(수)>
	06.21.(화)	1학기 출석부 및 성적단표 제출 마감
	06.22.(수)	1학기 성적사정
	06.27.(월)	2학년 대상 제1차 진급시험
	07.19.(화) ~ 07.29.(금)	2학기 수업계획서 입력(교수)
	07.24.(일)	1학년 대상 제1차 진급시험
	08.01.(월) ~ 08.05.(금)	제2차 졸업시험[변호사시험 모의시험]<휴식일 08.03.(수)>
	08.09.(월) ~ 08.10.(수)	2학기 수강신청
	08.22.(월) ~ 08.26.(금)	2학기 개강 준비기간

※ 학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2022학년도 제2학기 학사일정

● 2학기 : 8월 29일(월) 개강 - 12월 9일(금) 종강

학기	일 자	학사 진행 사항
2학기	08.29.(월)	2학기 개강
	09.01.(목) ~ 09.02.(금)	수강신청 변경 및 확인
	09.05.(월)	2022학년도 하계 실무수습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09.05.(월) ~ 09.08.(목)	외국어시험 응시대상자 원서접수(2학기 이상)
	09.09.(금) ~ 09.12.(월)	추석연휴
	09.13.(화) ~ 09.15.(목)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Drop기간
	09.13.(화) ~ 09.16.(금)	외국어시험(기간 중 지정 1일 시행)
	09.23.(금)	휴학 및 복학 마감
	10.03.(월)	개천절(휴무일)
	10.04.(화) ~ 10.07.(금)	2학기 중간 수업평가(학생)
	10.10.(월)	한글날 대체휴일(휴무일)
	10.14.(금) ~ 10.18.(화)	제3차 졸업시험[변호사시험 모의시험]<휴식일 10.16.(일)>
	10.17.(월) ~ 10.21.(금)	중간고사(수시고사)기간
	10.24.(월) ~	동계 실무수습 신청접수 시작
	11.21.(월) ~ 11.30.(수)	2학기 기말 수업평가(학생)
	12.05.(월) ~ 12.09.(금)	기말시험 기간
	12.09.(금)	2학기 종강
	12.07.(수) ~ 12.14.(수)	2학기 성적 입력 기간
	12.15.(목) ~ 12.19.(월)	성적공지 및 성적이의신청
	12.20.(화)	2학기 성적단표 제출 마감
	12.22.(목)	1학년 및 2학년 대상 제2차 진급시험
	12.22.(목)	2학기 성적사정
	01.17.(화) ~ 01.27.(금)	1학기 수업계획서 입력(교수)
	01.21.(일) ~ 01.24.(화)	설날연휴
	01.25.(수)	1, 2학년 진급 사정
	02.13.(월) ~ 02.15.(수)	1학기 수강신청
	02.20.(월)	학위수여식
	02.20.(월) ~ 02.24.(금)	1학기 개강 준비기간

※ 학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학사 안내

1. 시험, 성적, 수강신청에 관한 학사 안내

1) 학번

학번은 입학과 동시에 학생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로써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시험답안지 작성, 각종 증명신청 및 교부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사항이 이 학번에 의하여 전산처리되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졸업시까지 사용된다.

학번구조는 첫 4자리까지는 입학년도를 표시하고 중간 3자리는 대학원 및 학위과정의 고유번호이며 뒤 3자리는 학생 개인별 일련번호이다. (예 - 2022131001)

2) 등록

구 분		기 간	장 소
신입생		매학년도 1월 ~ 2월 중 지정기간	지정 시중은행
재학생	1학기	매학년도 2월 중 지정기간	지정 시중은행
	2학기	매학년도 8월 중 지정기간	지정 시중은행

※ 유의사항

소정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신입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되고 재학생은 미등록으로 제적됨 (학칙 제8조 및 제34조)

3) 시험 및 성적

▶ 시험종류 및 방법

시험은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매 학기별 중간시험, 기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필기, 구술 등 기타 방법에 의한다. (학칙 제24조)

▶ 성적평가

- 각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정기시험 성적과 수시평가, 과제, 발표·토론, 수업태도, 출석 등을 고려하여 100점 만점으로 종합 평가한다.
- 정기시험에 결시하는 자는 해당과목의 당해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F로 처리한다.

▶ 수료 인정

수업연한인 3년 이상 등록하여야 하고, 매 학년 2개 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2를 초과해야 한다. 취득학점의 인정은 해당학기에 개설된 강의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학칙 제27조)

▶ 출결과 평가

각 교과목의 출석률이 수업일수의 4분의 3에 미달한 경우 교과목 성적은 자동적으로 F로 처리된다.(학칙시행규칙 제14조)

▶ 성적의 표시

각 교과목의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학칙 제25조)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97 ~ 100	4.3	Co	74 ~ 76	2.0
Ao	94 ~ 96	4	C-	70 ~ 73	1.7
A-	90 ~ 93	3.7	D+	60 ~ 69	1.3
B+	87 ~ 89	3.3	F	60점 미만	0
Bo	84 ~ 86	3	P	합격	
B-	80 ~ 83	2.7	NP	불합격	
C+	77 ~ 79	2.3			

▶ 성적확인

매 학기 성적표는 본교 홈페이지 정보서비스에서 지정기간동안 확인할 수 있다.

▶ 성적이의신청

확인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정 기간 중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은 본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기구에서 심의한다.(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38조)

▶ 성적표 보관

성적표는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졸업 시까지 보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관리 및 수강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4) 수강신청

▶ 수강신청과 승인

수강신청은 본인의 책임 하에 교내 전산망에 게시된 수업계획서를 열람하고 수강과목과 해당사항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 수강신청 기간

학생은 매학기 공지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 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 변경은 개강 후 2주 이내에 수강신청 변경원을 교무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법학전문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강신청 유의사항

-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17~21학점(단, 학점인정을 받은 자는 13~21학점)으로 한다.
-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과목의 성적은 전부 F로 처리된다.
- 수강신청 시 수강과목 전산입력 오류로 발생하는 책임은 학생이 진다.
- 최종학기에는 6학점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학생 본인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에 대한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한다.(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 재수강과목 수강신청

- 재수강은 학기당 이수학점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고, 재수강 신청교과목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학업성적이 C+등급(평점 2.3)이하인 교과목에 한한다.
- 재수강 인정기준은 동일교과목 및 동일학수번호 또는 재수강으로 인정된 유사 및 대체과목으로 한다.
- 재수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의 최고 등급은 B+로 한다.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

▶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

- 개강 후 6주 이내에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 교과목 내에서 승인을 받아 취소할 수 있다. 단, 당해학기 수강학점이 6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수강신청 교과목 중 취소 교과목으로 승인된 교과목은 당해학기 수강학점에서 삭제하나 임의로 취소 또는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하고 학점수는 당해학기 성적 평균평점에 계산한다.
- 수강신청 취소로 인하여 당해학기 수강기준 학점이 미달되면 장학 대상에서 제외된다.(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

5) 시험

▶ 추가시험

추가시험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소정의 기일 내에 증빙서류를 교학과에 제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33조)

▶ 재시험

재시험은 교원(시간강사 포함)이 필요에 따라 정기시험 성적이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학생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34조)

▶ 조기시험

조기시험은 중간시험에 응시하고 과목별로 당해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한 경우, 군입대 또는 출산 및 질병(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에 의하여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35조)

2. 교육과정 및 학생에 관한 규정 안내

1) 교육과정

가. 수업일수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총당할 수 없는 때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6학기)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5년(10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 학기당 수강학점 및 졸업이수학점

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학기당 수강학점은 21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으며,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전공필수 30학점 이상, 전공선택 62학점 이상 총 92학점 이상으로 한다.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법률기본	실무필수	특성화전공영역 (의생명과학법)	기초법/외국법	외국어	기타영역
편성학점	24	6	30	13	23	231
이수학점	30		자유선택 영역 중 . 62학점 이상 이수			

특성화전공영역 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 필수실무교과목인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다.

라. 학점인정

-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대학에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자로 필요한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정의 시험을 거쳐 15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재학 중 실무수습 이수자에 대하여는 관련 학칙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유급

매 학년(2개 학기)에 취득한 전체학점을 통산한 평균평점이 2.2 이하인 자이거나, 또는 필수교과목 중 1과목 이상의 성적이 F인 자, 본인이 원할 경우, 그리고 진급시험에 불합격할 경우에 유급되며 유급된 학년에 취득한 B0 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한다.

3) 휴학 및 복학

가. 휴학

입학 후 1학기 동안 휴학 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기타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필하고 학기 초 4주 이내에 교무부원장의 확인을 받은 휴학원을 교학과에 제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학년단위로 한다(1학기 유급휴학 제외). 다만, 1년을 초과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 또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는 기간에는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복학

휴학기간 만료로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재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적처리 한다.

4) 제적 및 자퇴

가.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학력 또는 경력을 위조한 자
2.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4. 재학연한 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5. 징계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이 의결된 자
6. 3회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 또는 통산 2회 유급된 자
7. 자퇴원을 제출한 자
8. 사망한 자

나. 자퇴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를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포상 및 징계

가. 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나. 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으로 구분한다.

6) 졸업

가. 졸업이수학점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필수 30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이수학점 92학점 이상(특성화 과목 1과목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외국어시험

법학전문대학원 학위과정 학생은 재학연한 내에 영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인정하는 영어시험(TOEIC, TOEFL, G-TELP, TEPS등) 성적우수자는 영어시험 과목을 면제하며 성적우수자의 기준은 법학전문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다. 졸업시험

법학전문대학원 학위과정 학생의 졸업시험 응시자격은 전(全) 학기 학점 평균 2.2를 초과하고, 80학점(5학기)이상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졸업시험 실시 시기 및 시험과목, 합격선 등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IV.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현황

1. 법조실무교수

연번	성명	최종학위(전공)	주요경력
1	김덕중	원광대박사(법학)	- 변호사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2	김일룡	한양대박사(법학)	- 변호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부장검사
3	박미영	충남대석사(법학)	- 청주지검, 인천지검 검사 -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4	심용재	서울대학사(경제학)	- 변호사 - 법무법인 로월드, 영진, 정건 변호사
5	최단비	고려대석사(법학)	- 변호사 - 법무법인 총정 변호사
6	최영관	美)아메리칸대(JD)	- 미국변호사 - 관세청 교역협력과장
7	황창용	서울대학사(서양사학)	- 법무법인 한울, 광명 변호사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지원센터 자문위원

2. 비법조실무교수

연번	성명	최종학위(전공)	주요경력
1	김용길	성균관대박사(민법)	- 한국중재학회 이사 - 한국지적재산권학회 이사
2	윤현석	한양대박사(조세법)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출판이사

3. 법학이론교수

연번	성명	최종학위(전공)	주요경력
1	강승식	한양대박사(헌법)	- 한국공법학회이사 -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 자문위원
2	김선광	獨)튀빙엔대박사(상법)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집 부위원장 - (사)한국기업법학회 이사
3	김성원	원광대박사(행정법)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4	김은진	고려대박사 (생명과학법, 상법)	- 세계유기농운동연맹 한국조직위원회 자문위원 - 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성 정보센터 편집위원
5	김희철	고려대박사 (금융증권법, 상법)	- (사)한국기업법학회 이사 - Asian Business Lawyer 편집위원
6	문정해	美)일리노이대박사(상법)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7	송광섭	원광대박사(형사법)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8	윤상민	원광대박사(형법)	- 한국법학회 이사 - (사)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실장
9	이계일	獨)뒤셀도르프대박사 (기초법)	- 한국법철학회 이사 - 법과사회이론학회 이사
10	이재경	성균관대박사 (민법)	- 독일괴팅엔대학교 의료법연구소 Post-Doc.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 연구원
11	이혜리	성균관대박사 (민법)	- 법전합동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 동국대학교 조교수
12	전정환	獨)퀵른대박사(헌법)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13	정연부	성균관대박사(행정법)	- 익산시 고도보존 포럼 위원 - 북경대학 인터넷법 편집위원
14	최행식	원광대박사(민법)	- 한국법학회 부회장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15	피정현	연세대박사(민사소송법)	- 한국중재원 이사장 - 한국비교사법학회 상임이사 편집위원
16	홍승희	獨)콘스탄츠대박사 (형사법)	- 고려대 의사법연구소 연구교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7	홍태석	日)도시사대박사 (형사법)	- 한국법무학술원 법무연구센터장 - 전주대 법경찰행정학부 객원교수
18	황만성	한양대박사(형사법)	-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책임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V. 원광대학교 캠퍼스 안내 및 연혁

1. 시설안내

① 원광대학교 캠퍼스 안내



전체	대학본부	부속기관	단과대학	대학원	학생지원관
57	경영대학원	72	교육대학원	14	대학원
20	동양학대학원	26	법학전문대학원	19	보건·보완의학대학원
66	식품산업기술대학원	70	한의학전문대학원	51	행정대학원

◎ 30 : 학생생활관 용화관(4,5층 남학생, 6,7층 여학생)

◎ 24 : 학생회관

② 학생생활관 이용안내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용학생생활관(용화관)은 '맑고 밝고 훈훈하게'라는 관훈 아래 남학생은 용화관 4층 22개 호실과 5층 20개 호실, 여학생은 6층 20개 호실과 7층 22개 호실 수용인원 총 168명으로 1인실과 2인실로 운영하고 있다.

생활관은 대학 내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숙식을 제공하는 주거 체계를 의미하는데 생활관이 갖고 있는 장점은 시간, 경비의 절약과 함께 대학인의 교육적 결속, 공공생활을 통한 자아 조절 능력과 이해 능력의 확대, 인간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다.

③ 도서관 이용안내

가. 자료 현황

구 분		종 수	권 수	합 계	비 고
단행본	법학도서		100,327	109,908권	
	법학관련도서		9,581		
학술잡지	국내인쇄저널	109		460종	
	국내전자저널	247			
	국외전자저널	104			
Web-DB		4종		4종	

나. 층별안내

▶ 1층

구 분	좌 석 수	비 고
개가 열람실	46석	
서고		
정기간행물실		
정보검색실	14석	
대출실		도서 대출 및 반납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합 계	60석	

▶ 자유열람실

구 분	좌 석 수	비 고
자유열람실 (2층)	127석	칸막이 열람석
리서치룸 (2층)	48석	6실 × 1실당 8명
자유열람실 (3층)	84석	칸막이 열람석
합 계	259석	8개실

다. 이용시간

- 학기 중

▶자료열람실(1층) : 평 일 09:00~22:00

토요일 09:00~17:00

▶자유열람실(2층, 3층) : 24시간 개방

- 방학 중

▶자료열람실(1층) : 평 일 09:00~17:00

토요일 09:00~17:00

▶자유열람실(2층, 3층) : 24시간 개방

* 감염병 예방 등 학생의 안전 또는 시설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 조정될 수 있음

라. 대출 및 반납

▶도서관 자료를 다음과 같이 관외 대출 받을 수 있다.

- 1)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 40책 60일
- 2) 법학전문대학원 이외의 본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직원, 재단 임직원 : 20책 60일
- 3)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조교 : 20책 60일
- 4) 법학전문대학원 이외의 본 대학교 소속 대학원생, 조교 : 20책 60일
- 5) 대학 재학생, 지역주민 및 본교동문 : 5책 14일
- 6) 기타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 허가의 내용에 따름

※ 대출기간의 갱신은 다음 대출신청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마. 원문복사 신청제도

▶본교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타 기관에 복사 의뢰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특허자료, 단행본(부분복사) 등 모든 자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2. 교 가

원광대학교 교가

작사 이은상
작곡 김동진

f 장엄하게

보아라 원광대 거룩한 터전 정각의 종소리
 울려나는 곳 밝음과 참됨을 배우고 닦아 어둠과 거짓을
 물리치리니 원-광 원광대학 진리의도-량
 원 광 원광대학 학문의전-당 이 나라 이 겨 레
 이끌어나-갈 문 화 의 새 일 쉼 여기-에 있-다

f
P
P
Cresc.
f
ff

3. 상징물

○ SYMBOL - 교조(봉황)

새 가운데 봉황을 따를 鳥類가 있으라.

봉황은 상상의 '새'이면서 우리들 동양인의 머리속에 엄연히 존재하는 길조이기도 하며 원광의 상징이다.

○ COLOR - 교색(황금색)

예로부터 永遠하다 하는 것을 黃金에 비유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며, 나중에도 그러할 것이 황금색이다. 황금색은 우선 젊음을 수용, 富와 盛을 형성하고 빛과 調和를 의미한다.

또한 부드러움이 황금색을 대변한다.

○ TOWER - 교시탑

원광의 무한한 광채와 원광인의 넉넉한 품성이 그러하듯이 본교의 상징적 내용을 극명하고 중량 있게 담아 갖춘 것이 교시탑이다.

○ FLOWER - 교화(백목련)

蘭이나 竹 등에서 맛볼 수 없는 너그러운 자태 그러면서도 높디높은 기품을 그 깨끗한 기지가 말하고 있다. 너그럽다는 것은 곧 仁이며 德이요 福이며 智를 뜻함이다.

○ TREE - 교목(은행나무)

피곤한 이에게 안식을 주며, 병든 자에게 平康을

우울한 이에게 기쁨을, 애통해 하는 사람에게 만족감을 안겨주는 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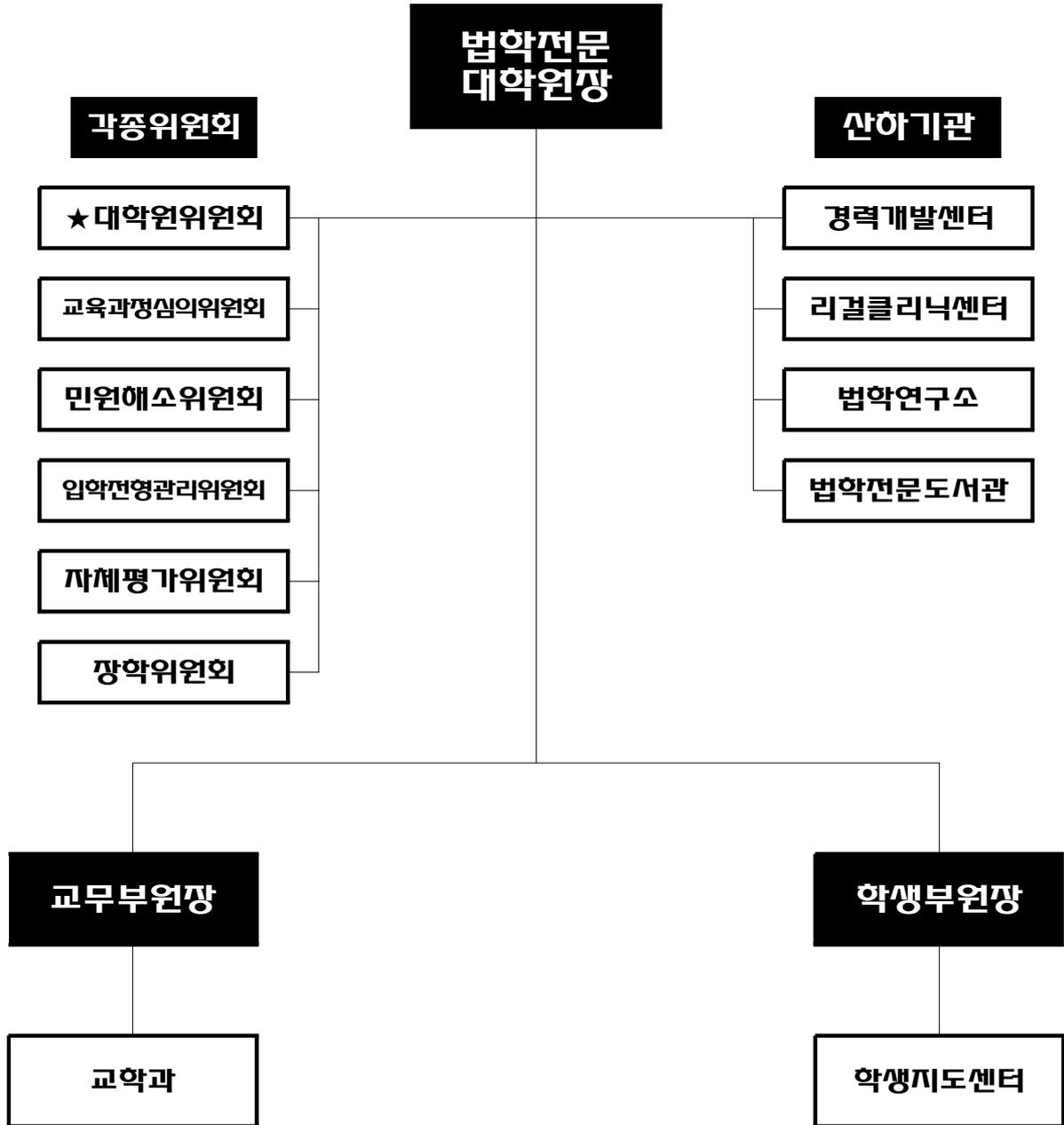
이 나무야 말로 원광의 彩를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사색하게 하는 젊음의 나무,

운동하는 나무, 수확하는 나무여서 교목으로 뽑는다.

4.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혁

년 월	내 용
1946. 05	유림학림으로 개교
1954. 02	법학과 설치인가
1967. 03	시민법률상담소 설립
1971. 12	종합대학교로 승격
1982. 10	법과대학 법학과로 독립
1996. 04	법학연구소 개소
2000. 0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법학분야평가 우수대학 선정
2004. 12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추진위원회 발족
2007. 04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 설치
2008. 02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대학 선정
2008. 0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2008. 11	법학전문대학원 초대 원장 나용호 총장 취임
2009. 02	법과대학 법학과 폐지
2009. 03	법학전문대학원 1기 60명 입학
2010. 03	법학전문대학원 2기 65명 입학
2011. 02	법학전문대학원 2대 원장 전정환 박사 취임
2011. 03	법학전문대학원 3기 63명 입학
2012. 02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배출(50명)
2012. 03	법학전문대학원 4기 64명 입학
2013. 01	법학전문대학원 3대 원장 김성원 박사 취임
2013. 02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배출(53명)
2013. 03	법학전문대학원 5기 65명 입학
2014. 01	원광로스쿨법조동문회 창립, 회장 김준환 변호사(1기)
2014. 02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배출(44명)
2014. 03	법학전문대학원 6기 62명 입학
2015. 02	법학전문대학원 4대 원장 이희성 박사 취임
2015. 02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배출(64명)
2015. 03	법학전문대학원 7기 64명 입학
2016. 02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배출(66명)
2016. 03	법학전문대학원 8기 60명 입학
2017. 02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배출(44명)
2017. 03	법학전문대학원 9기 60명 입학
2018. 02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배출(55명)
2018. 03	법학전문대학원 10기 64명 입학
2018. 06	법학전문대학원 제5대 원장 김덕중 박사 취임
2019. 02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배출(58명)
2019. 03	법학전문대학원 11기 63명 입학
2020. 02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배출(49명)
2020. 03	법학전문대학원 12기 64명 입학
2021. 02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배출(54명)
2021. 03	법학전문대학원 13기 63명 입학
2022. 02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배출(78명)

5. 법학전문대학원 기구도



VI. 교육과정 안내

1. 교육과정편성

학수번호	학기	구분	과목명	영문명	분야	학점
13201005	1/1	전공필수	헌법1	Constitutional Law 1	법률기본교과목	3
14205019	1/1	전공선택	민법1	Civil Law 1	민사법	3
13201007	1/1	전공필수	민법2	Civil Law 2	법률기본교과목	3
14205020	1/1	전공선택	민법3	Civil Law 3	민사법	3
13201004	1/1	전공필수	형법총론	General Part of Criminal Law	법률기본교과목	3
13102013	1/1	전공필수	법조윤리	Legal Ethics	실무필수	1
13202013	1/1	전공필수	법률정보조사	Legal Research	실무필수	1
14208007	1/1	전공선택	법학방법론	Legal Methodology	기초법	2
14209009	1/1	전공선택	의생명윤리와 법	Biomedical Ethics & Law	특성화(의생명과학법)	3
14209037	1/1	전공선택	과학기술과 법	Law and Technology	특성화(의생명과학법)	3
13201015	1/2	전공필수	민사소송법1	Civil Procedure Law1	법률기본교과목	3
13201014	1/2	전공필수	형사소송법1	Criminal Prodedure Law 1	법률기본교과목	3
14204016	1/2	전공선택	헌법2	Constitutional Law2	공법	3
13201006	1/2	전공필수	민법4	Civil Law4	법률기본교과목	3
14205021	1/2	전공선택	재산법연습	Study of Property Law Cases	민사법	3
14206019	1/2	전공선택	형법각론	Special Discussions of Criminal Law	형사법	3
14208021	1/2	전공선택	법사상사	History of Legal Thoughts	기초법	3
14209022	1/2	전공선택	의료와법	Medicine and Law	특성화(의생명과학법)	3
14209038	1/2	전공선택	의료민사판례연구	Civil Cases on Medical Practice	특성화(의생명과학법)	3
13207069	2/1	전공필수	상법1	Commercial Law 1	법률기본교과목	3
13201013	2/1	전공필수	행정법1	Administrative Law 1	법률기본교과목	3
14203121	2/1	전공선택	경찰실무	Police Practice & Legal Issues	실무	3
14204025	2/1	전공선택	헌법특강	Special lecture in Constitutional Law	공법	3
14204026	2/1	전공선택	헌법소송법	Constitutional Litigation Law	공법	3
14205232	2/1	전공선택	민법5	Civil Law 5	민사법	3

학수번호	학기	구분	과목명	영문명	분야	학점
14205032	2/1	전공선택	민사소송법2	Civil Procedure Law 2	민사법	3
14205089	2/1	전공선택	중재법	Arbitration Law	민사법	3
14206032	2/1	전공선택	형법판례연구	Leading Case Study of Criminal Law	형사법	3
14206033	2/1	전공선택	경제형법	Economic Criminal Law	형사법	3
14206036	2/1	전공선택	형사소송법2	Criminal Procedure Law 2	형사법	3
14207036	2/1	전공선택	기업금융법	Company Law and Financial Regulation	상사법	3
14208009	2/1	전공선택	법철학,생명,국가	Legal Philosophy, Bioethics, State	특성화(의생명과학법)	2
14210043	2/1	전공선택	미국법(American Law)	American Law	외국어	3
14210044	2/1	전공선택	미국 통일 상법 (Uniform Commercial Code)	Uniform Commercial Code	외국어	3
14210045	2/1	전공선택	유엔 협약 사례 연구 (CISG Case Studies)	CISG Case Studies	외국어	3
14212044	2/1	전공선택	개별근로관계법	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	노동법	3
14213045	2/1	전공선택	세법총론	General Tax Law	조세법	3
14214047	2/1	전공선택	조약법연구	Studies on the Law of Treaties	국제법	3
14216047	2/1	전공선택	환경법일반	Environmental Law	환경법	3
13202050	2/2	전공필수	실습과정(A)	General Practice Clinic (A)	실무필수	1
13202049	2/2	전공필수	법문서작성	Legal Writing	실무필수	2
14203050	2/2	전공선택	검찰실무1	Prosecution Practice and Criminal Procedure 1	실무	3
14203051	2/2	전공선택	형사재판실무	Practice of Criminal Trials	실무	3
14204054	2/2	전공선택	헌법연습	The Constitutional Law Practice	공법	3
14204055	2/2	전공선택	헌법판례연구	Study of Constitutional Precedent	공법	3
14204028	2/2	전공선택	행정법2	Administrative Law 2	공법	3
14204082	2/2	전공선택	행정법특강	Topic of the Administrative Law	공법	3
14205058	2/2	전공선택	민법종합연습1	Comprehensive Seminar on Civil Law 1	민사법	3
14205062	2/2	전공선택	민사소송법종합세미나	Comprehensive Seminar on Civil Procedure Law	민사법	3
14205033	2/2	전공선택	민사절차법특강	Special Lecture in Civil Procedure	민사법	3
14205060	2/2	전공선택	민사실무1	Practical Civil Law 1	민사법	3
14205061	2/2	전공선택	현대민사분쟁사례연구	Study of Modern Civil Disputes	민사법	3
14206065	2/2	전공선택	형사소송법특강	Special Lecture in Criminal Procedure Law	형사법	3
14206063	2/2	전공선택	형법연습	Seminar in Criminal Law	형사법	3

학수번호	학기	구분	과목명	영문명	분야	학점
14206066	2/2	전공선택	형법특강	Special Lecture in Criminal Law	형사법	3
14206035	2/2	전공선택	형사정책	Criminal Policy	형사법	3
14207066	2/2	전공선택	상법2	Commercial Law 2	상사법	3
14209066	2/2	전공선택	생명과학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n Biotechnology	특성화(의생명과학법)	3
14209067	2/2	전공선택	유전공학법	Genetic Engineering Law	특성화(의생명과학법)	3
14208020	2/2	전공선택	법사회학	Sociology of Law	기초법	3
14212073	2/2	전공선택	집단노사관계법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	노동법	3
14214104	2/2	전공선택	국제법사례연습	A Case-Based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국제법	3
14213074	2/2	전공선택	세법각론	Particulars Tax Law	조세법	3
14215076	2/2	전공선택	국제거래법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국제거래법	3
14216077	2/2	전공선택	환경분쟁과소송실무	Environmental Disputes and Practices	환경법	3
14210039	2/2	전공선택	中國法的理解	Understanding of Chinese Law	외국어	3
14208110	2/2	전공선택	중국법	Law of China	외국법	3
14210070	2/2	전공선택	日本法の理解	Comprehension of Japanese Law	외국어	3
14210071	2/2	전공선택	International Securities Transaction Law	International Securities Transaction Law	외국어	2
13202051	3/1	전공필수	실습과정(B)	General Practice Clinic (B)	실무필수	1
13202078	3/1	전공필수	모의재판	Moot Court	실무필수	1
14203079	3/1	전공선택	검찰실무2	Prosecution Practice and Criminal Procedure 2	실무	3
14203080	3/1	전공선택	민사재판실무	Practice of Civil Trials	실무	3
14204058	3/1	전공선택	행정법3	Administrative Law 3	공법	3
14204057	3/1	전공선택	행정법연습	Study of Administrative Law Cases	공법	3
14204084	3/1	전공선택	공법실무	Legal Writing on Public Law	공법	3
14205085	3/1	전공선택	민법종합연습2	Comprehensive Seminar on Civil Law 2	민사법	3
14205091	3/1	전공선택	민사소송법연습	Practice of Civil Procedure	민사법	3
14205088	3/1	전공선택	민사실무2	Practical Civil Law 2	민사법	3
14206095	3/1	전공선택	형사소송법연습	Seminar In Criminal Procedure	형사법	3
14206091	3/1	전공선택	형사법의 쟁점과 사례	Cases and Problems in Criminal Law	형사법	3
14206092	3/1	전공선택	인권보호와 피해자학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Victimology	형사법	3
14206093	3/1	전공선택	형사실무	Criminal Advocacy Practice	형사법	3

학수번호	학기	구분	과목명	영문명	분야	학점
14207067	3/1	전공선택	상법3	Commercial Law 3	상사법	3
14207096	3/1	전공선택	국제금융거래법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s: Law and Regulation	상사법	3
14209097	3/1	전공선택	국제생명과학법	International Biotechnology Law	특성화(의생명과학법)	3
14209098	3/1	전공선택	생명의료법세미나	Seminar of Biomedical Law	특성화(의생명과학법)	3
14209069	3/1	전공선택	의료소송실무	Medical Litigation Practice	특성화(의생명과학법)	3
14208008	3/1	전공선택	비교법	Comparative Law	기초법	3
14210099	3/1	전공선택	International Oil & Gas Transaction	International Oil & Gas Transaction	외국어	2
14212101	3/1	전공선택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Law	노동법	3
14214076	3/1	전공선택	국가책임법연구	Studies on State Responsibility	국제법	3
14217120	3/1	전공선택	경제법	Economic Law	경제법	3
14204104	3/2	전공선택	공법종합사례연구	Case and Commentary on Public Law	공법	3
14102153	3/2	전공선택	행정법종합세미나	Comprehensive Seminar on Administrative Law	공법	3
14205105	3/2	전공선택	민사법종합사례연구	Seminar : Advanced Issues in Civil Cases	민사법	3
14206106	3/2	전공선택	형사법종합사례연구	Case Studies in Criminal Law	형사법	3
14206094	3/2	전공선택	형사실무연습	Advanced Criminal Advocacy Practice	형사법	3
14207068	3/2	전공선택	상법연습	Integral Studies of Commercial Law	상사법	3
14207109	3/2	전공선택	사모투자전문회사법	Private Equity Fund Regulation	상사법	2
14210112	3/2	전공선택	Mineral Law	Mineral Law	외국어	2
14210113	3/2	전공선택	Mutual Fund Regulation	Mutual Fund Regulation	외국어	2
14210114	3/2	전공선택	Law of Global Governance	Law of Global Governance	외국어	3
14212116	3/2	전공선택	노동법연습	Exercises in Labour Law	노동법	3
14213117	3/2	전공선택	조세법연습	Tax Law Practice	조세법	3
14215118	3/2	전공선택	국제사법	Private International Law	국제거래법	3

2. 교과목해설

13201005 헌법1 Constitutional Law 1

본 강좌에서는 기본권론을 중심으로 위헌심사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학습한다. 위헌심사는 공권력 행사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현행 법제상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형식적 법치주의요소 위반 여부, 실질적 법치주의 위반 여부,

그 밖의 헌법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본 강좌에서는 이들 세 가지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위헌심사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14205019 민법1 Civil Law 1

본 교과목은 민법총칙을 중심대상으로 강의된다. 먼저 민법의 기초단계로서 사법의 체계와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법률관계에서의 권리를 기반으로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에 학습하되, 특히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소멸시효의 법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법률문제 및 사례를 해결할 수 있다.

13201007 민법2 Civil Law 2

본 교과목은 채권법총론을 중심대상으로 강의된다. 먼저 채권법 전반의 체계와 제도를 개괄적으로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채권의 목적을 살펴보고, 채권의 효력에서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지체, 책임재산 보전제도에서는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을 각 학습하며,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의 각 제도와 쟁점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14205020 민법3 Civil Law 3

본 교과목은 채권법각론을 중심으로 강의된다. 채권법관계의 발생원인인 계약(약정)과 법률규정(법정)에 관한 법리검토가 본 교과강의의 핵심이다. 계약에서는 계약의 성립, 효력, 해제제도를 학습하고, 구체적으로 매매, 임대차계약 등 15개의 전형계약을 살펴본다. 법정채권에서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각 제도와 쟁점을 검토하여 법률문제 및 사례를 해결할 수 있다.

13201004 형법총론 General Part of Criminal Law

형법은 범죄를 법률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법률효과로 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본 교과목은 이러한 형법의 주요이론에 해당하는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형벌론 등의 이론을 관련 사례와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탐구하며, 현행형법 규정내에서 주요이론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학습한다. 또한 사례분석으로부터 형법이론을 실제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일반이론과 관련한 형법각칙의 주요 개별범죄들을 연계하여 학습함으로써 종합적 사고력과 창의적 해결능력을 함양한다.

13102013 법조윤리 Legal Ethics

본 교과목은 전문직업인(Profession)으로서의 법조인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윤리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장차 법조로 진출하게 될 학생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조인상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한국 법조의 형성과정에서의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둘째, 법조 각 지역별로 관련된 법규 및 실제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 윤리내용을 도출하고, 셋째, 법률실무에서 부딪히는 윤리적 난제의 해결책과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살펴본다.

13202013 법률정보조사 Legal Research

법학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학습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나아가 향후 법률실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교과목인 법률정보조사에서는, 문헌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학문분야를 일반적으로 문헌정보학이라 부르는데

작안하여, 법률정보에 관한 책자형태의 자료나 디지털형태의 정보로 된 법률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14208007 법학방법론 Legal Methodology

법학방법론은 법률가들이 법의 해석, 적용과 관련해서 수행하는 바에 대한 학문적 성찰을 수행하는 학문분과이다. 법학이 자의적 행위 영역이 아니라, 상호주관적으로 검증가능한 학문분과가 될 수 있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성찰이라는 차원에서 문리적 해석,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 법률해석의 다양한 기준에 대한 성찰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법관에 의해 수행되는 법의 계속 형성에 대해 법률보충적 법형성 및 법률수정적 법형성 등의 분류에 입각해 검토한다. 더 나아가 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제반 이론들을 법해석학, 문제변증론, 법적 논증이론, 법현실주의, 이익법학, 평가법학, 자유법운동 등의 표제 하에 살펴본다.

14209009 의생명윤리와법 Biomedical Ethics & Law

본 교과목에서는 의료와 생명과학에 있어서의 인간존엄성에 관한 이해와 그 침해가능성을 인식하고, 의생명과학에 대한 법의 개입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의생명과학과 인간존엄의 상충문제 해결을 위한 적합한 법적 수단을 모색한다.

14209037 과학기술과 법 Law and Technology

본 교과목에서는 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법적 규제와 보호법리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주요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현행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으로서의 입법론을 검토한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개인간 또는 국가간, 개인과 국가간 분쟁 등으로 인한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과학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산학협력 등의 방안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화를 위한 기업설립 등의 현황에 비추어 기업의 이윤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과학기술관련기업법제의 의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13201015 민사소송법1 Civil Procedure Law 1

민사실체법(민법, 상법 등)과 비교하여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은 소송과정 전체에 대한 사전적 이해가 필요하고, 실체법적 관점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본 교과목에서는 먼저, 소송의 전 과정을 개관한다. 그리고 소송의 기초개념(법원, 당사자, 소송물, 소송요건, 소송의 기본원칙 등) 및 구체적 소송과정 중에서 소제기, 변론과 증거조사(증거법 포함)를 학습한다.

13201014 형사소송법1 Criminal Procedure Law 1

형사절차는 형법을 구체적으로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이며, 형사절차와 관련한 대표적 법률이 형사소송법이다. 형사소송법1은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소송의 주체, 소송행위,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을 다룬다.

14204016 헌법2 Constitutional Law 2

본 강좌에서는 통치구조론을 학습한다. 먼저 대의제, 권력분립원리, 정부형태로 구성되는 통치구조 총론을 살펴보고, 각론으로 국회, 정부, 법원의 권한과 상호 관계를 검토한다. 아울러 헌법총론 주제 중에 정당제도와 같이 통치구조론과 관련있는 주제도 다룬다.

13201006 민법4 Civil Law 4

본 교과목은 물권법을 중심으로 강의된다. 먼저 물권법 전반의 체계와 제도를 개괄적으로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물권법총론에서는 물권법 적용의 원리와 물권변동 등을 살펴보고, 물권법각론에서는 기본물권으로서 점유권과 소유권(취득시효, 명의신탁, 공유 포함)을,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법정지상권 포함), 전세권, 지역권을,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비전형담보물권으로서 가등기담보법 등을 각 검토하되, 핵심적인 쟁점제도들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해결연습을 통하여 이해를 도모한다.

14205021 재산법연습 Study of Property Law Cases

본 교과목은 민법총칙, 채권법, 물권법 등 재산법에 대한 주요쟁점의 사례연습을 중심으로 강의된다. 구체적으로 민법총칙 영역에서는 미성년자, 법인(비법인사단 포함), 법률행위 전반, 소멸시효 등의 쟁점을, 채권법 영역에서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양도, 변제, 상계, 해제, 매매, 임대차,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의 쟁점을, 물권법 영역에서는 물권변동, 명의신탁, 취득시효, 공유,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등의 쟁점을 각 학습한다. 각 제도의 핵심쟁점을 검토함에 있어서 사례연습을 병행하며, 이를 통하여 재산적 법률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4206019 형법각론 Special Discussions of Criminal Law

형법총론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범죄유형을 그 보호법익에 따라 나누어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등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검토한다. 먼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는 생명·신체·자유·명예·신용·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등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의 유형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는 방화 및 실화·일수와 수리·교통방해·아편·통화 등의 범죄 등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사회생활에서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에 대하여 검토하며,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는 국가의 존립과 권위 또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 내란·외환·국기·국교·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14208021 법사상사 History of Legal Thoughts

법사상사의 전개를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대 사회 다양하게 등장하는 법적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틀들을 역사 속에서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사상가들의 고민에 대한 일별을 통해 획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법학의 이론적, 제도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각 시대의 사상을 개관하면서 이들 사상적 흐름에 비추어서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법제도 및 사상적 문제점들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데 중점을 둔다.

14209022 의료와법 Medicine and Law

현대사회는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달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의료분쟁의 원인으로는 주로 의료혜택의 일반화, 환자의 과잉기대와 의료의 대응곤란 및 위험성, 의사의 윤리의식저하, 환자의 권리의식신장 등을 들 수 있다. 본 교과목은 이러한 변화된 의식으로부터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의료 관련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함을 목적

으로 한다. 먼저 의료행위의 개념과 특성, 의사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의료과오소송과 민·형사법적 책임문제 그리고 인공임신, 뇌사 및 장기이식 등 의료행위의 현대적 과제에 관하여 기본이론과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함으로써 의료사고의 예방과 분쟁해결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함양한다.

14209038 의료민사판례연구 Civil Cases on Medical Practice

우리법원은 의료과오의 문제를 주로 불법행위책임으로 다룬다. 그리하여 본 강의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주요 의료민사판례를 소개한다. 진료과오와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에서 나타난 인과관계, 증명책임,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다룬다.

13207069 상법1 Commercial Law 1

본 교과목은 상법학의 기초이론에 대한 이해를 주된 목표로, 상법 제1편 총칙과 제2편 상행위를 학습한다. 이를 위하여 총칙편에서는 상법상 법률관계의 귀속 주체인 상인과 이를 둘러싼 인적 설비 및 물적설비, 상업장부, 상업등기 문제를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상행위편에서는 주요 상행위의 관련 이론을 학습한다.

13201013 행정법1 Administrative Law 1

행정주체의 작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 요구되는 행정법의 기본적인 이론을 연구한다. 이를 통하여 행정법 영역에서 요구되는 입법정책적능력과 분쟁해결능력을 배양한다. 연구대상은 행정법의 개념,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 기타 다양한 행정작용, 행정절차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등을 중심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크게 세 단계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먼저, 기본이론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선행하여 기본소양을 갖춘다. 이어서,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여 응용능력을 기른다. 끝으로, 이론과 현실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4203121 경찰실무 Police Practice & Legal Issues

위험방지 및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등 경찰행정법 분야, 압수수색과 통신 등 수사 분야, 과학적 증거 등 법과학 분야, 교통, 성폭력 등 특수 분야에 대한 법리와 실무의 조화를 위해 경찰의 법집행 및 해석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실무적 절차,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미 학습했던 방대한 개별 법 이론을 경찰사례에 적용해보면서 사회학적·과학적·법률적 지식들이 융합되어 활용되는 과정을 경험한다.

14204025 헌법특강 Special lecture in Constitutional Law

본 교과목은 헌법 전범위에 걸쳐 헌법판례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집중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이론(헌법기초이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을 일괄하여 정리·체계화하기 위한 심화학습과목이다. 헌법 전반의 주요내용을 빠른 시간에 학습함으로써 헌법교과목의 구조와 핵심적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헌법판례 학습이 용이할 수 있도록 능력 함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14204026 헌법소송법 Constitutional Litigation Law

헌법재판은 헌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으로서 국가작용의 합헌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형태의 통제절차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제도란 헌법에 의해 부여된 통치권의 행사가 항상 헌법이 정한 내용,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헌법재판제도는 재

판기관 및 재판의 시점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헌법재판제도의 이론적, 철학적, 역사적 근거를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를 상세하게 비교·분석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조명한다.

14205232 민법5 Civil Law 5

본 교과목은 친족상속법을 중심으로 강의된다. 먼저 재산법과 구분되는 친족상속법의 본질적 특징과 체계를 개괄적으로 학습한다. 구체적으로는 친족관계에서는 부부관계로서 혼인과 이혼, 친자관계, 부양관계 등의 제도와 쟁점을 살펴보고, 상속관계에서는 상속법의 제반문제, 유언, 유증, 유류분 등의 제도와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주요 쟁점에 대하여는 이론, 판례, 사례를 접목하여 실질적 이해를 도모한다.

14205032 민사소송법 2 Civil Procedure Law 2

민사소송법1의 연속으로 소송종료의 원인과 그 효력인 기판력 등을 학습하여 제1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그리고 하급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인 상소관련 문제(상고이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파기판결의 기속력 등)와 재심관련 문제를 학습한다. 그 외에 복합소송인 청구병합소송 및 다수당사자소송도 포함한다.

14205089 중재법 Arbitration Law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커다란 축으로서,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私法上의 분쟁을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제도를 이해한다. 중재법은 중재의 개념, 중재인의 선정, 뉴욕협약 등 중재제도의 일반론과 중재절차에 관하여 고찰하고, 중재실무를 익히도록 학습한다.

14206032 형법판례연구 Leading Case Study of Criminal Law

형법총론과 각론에서의 이론을 바탕으로 판례를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법판례를 관통하고 있는 법적 논리 및 법리를 이해하고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실정법과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례의 법리를 학습한다.

14206033 경제형법 Economic Criminal Law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경제형법은 세계적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경제형법은 경제생활, 즉 경제질서, 개별 경제제도와 같은 초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경제행위 중 거래수단과 관련한 남용행위 등에 대해서 형벌·보안처분·과태료 등의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모든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경제형법 관련 법규범 중, 국민경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면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경제범죄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그 학습범위를 집중하고자 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경제형법의 기초가 되는 경제형법의 보호법익, 법인처벌론, 경제행정과 형법 등을 학습한 후, 회사경영 관련업무, 산업스파이행위, 은행업무, 금융업무, 증권, 독점금지법, 보험, 조세포탈 등과 관련한 개별 범죄현상 및 규제 법규들을 습득한다.

14206036 형사소송법 2 Criminal Procedure Law 2

본 교과목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가지는 가치를 이해하고, 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체계와 내용을 검토하며 기타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또한 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서 재판과 그 재판의 효력을 살펴보고,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인 상소를 학습한다.

14207036 기업금융법 Company Law and Financial Regulation

합명·합자·유한책임·유한·주식회사의 자본조달에 관한 법 규정 및 관련 중요 판례들을 연구하여 로스쿨 졸업 후 기업 및 금융회사 종사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학습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i) 우리 상법 회사편에 규정되어있는 각 기업형태에 관한 일반론 및 특징을 법조문과 판례위주로 살펴보고, ii)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인 각종 사채발행과 주식발행에 관한 법조문 및 관련 판례를 살펴본다.

14208009 법철학, 생명, 국가 Legal Philosophy, Bioethics, State

생명공학, 낙태, 안락사 등 현대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생명윤리의 여러 쟁점들을 현대헌정국가의 주요 법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 자유, 생명권 등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규명하고 이를 구조화 해 본다. 생명윤리 관련 쟁점들에 대한 탐구는 우리 법질서의 근본적 물음들, 예컨대 현대 국가가 사회윤리를 법적으로 어느 정도나 관철할 수 있는지, 헌정국가에서 자유의 제한은 언제 가능하며 헌정국가와 정의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의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14210043 미국법 American Law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주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미국법 원칙 및 사법제도를 바르게 이해하여, 향후 미국과의 소송, 중재 등 분쟁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식을 습득하고, 미국의 법원칙과 우리 법원칙의 비교 학습을 통해, 양국의 법원칙에 대한 지식을 깊이 향상시키는 것이 본 교과목의 주요 목표이다. 미국의 연방 및 주 법원의 사법제도를 개관하고, 미국의 민사법(민사소송법, 계약, 상거래, 불법행위, 제조물책임 등)과 미국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중요한 법원 판결을 분석하면서, 미국 법원칙을 학습한다.

14210044 미국통일상법 Uniform Commercial Code

미국 통일상법(UCC) 중, 제2편 매매와 제5편 신용장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며, 매매계약과 신용장거래 관련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미국판례 연구를 통해, 국제상거래 실무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쟁점분석과 법적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미국의 통일상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성안 시 주요한 참고 법원으로, 본 강좌에서는 매매계약관련 유엔협약과 미국통일상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연구하며, 무역거래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신용장거래에 대한 미국법과 국제신용장 통일규칙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은 다양한 국제거래법의 법원에 대한 기초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14210045 유엔협약사례연구 CISG Case Studies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물품거래의 중요한 국제법원인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을 적용한 협약가입국 법원

의 판례와 우리나라 기업이 제소된 사건의 판결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각 체약국의 판례 분석을 통해, 해당 국가의 무역정책, 법문화, 법적 사고, 법제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학생들이 향후 우리나라와 체약국간의 국제매매계약관련 분쟁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국제법무 지식 배양을 목표로 한다.

14212044 개별근로관계법 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

본 교과목에서는 노동법의 본질과 개념을 이해하고, 개별적노사관계법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나아가 근로관계의 성립과 변동 및 종료,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등등의 이론과 판례 및 학설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전문 법조인의 능력을 함양한다.

14213045 세법총론 General Tax Law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버팀목은 자유와 재산이고, 그 중에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분야가 조세이다. 국가의 경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국가와 국민간의 조세분쟁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조세법은 법률실무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교과목은 조세관련 법적 분쟁을 둘러싼 조세법의 기초로서 그 핵심내용을 학습하고 이 학습을 통하여 조세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판단기준을 확립하고자 한다. 본 교과목의 강의는 조세의 의의,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경정청구, 국제우선의 원칙, 국제세의 부과권 제척기간, 소멸시효, 가산세, 국제환급, 조세불복제도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 교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 민사법, 상사법, 행정법 등 관련 법학에 대한 선행지식이 필요하다.

14214047 조약법연구 Studies on the Law of Treaties

분권화된 입법구조를 갖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조약은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 규범인 국제법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다. 조약의 체결로 인하여 비로소 국제법 주체들의 권리 및 의무가 명확해지는 바, 조약에 대한 이해는 국제법에 대한 이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는 국제법의 법원 중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전반적인 쟁점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강좌는 조약의 체결, 조약의 유보, 조약의 발효 및 잠정적 적용, 조약의 적용, 준수와 해석방법, 조약과 제3국, 조약의 개정과 변경 및 조약의 부적법, 종료 또는 시행정지 등에 관한 쟁점에 대한 고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4216047 환경법일반 Environmental Law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환경법의 중요성 또한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환경법의 일반이론은 물론, 개별 분야별 환경법적 쟁점들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학습한다.

13202050 실습과정(A) General Practice Clinic(A)

본 교과목은 대학원에서 법학이론 및 실무지식을 습득한 학생들에게 실제로 발생한 법률분쟁의 현장과 접촉하게 하고, 그 현장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습득한 법학 지식을 현실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의 연마를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법조인으로서 평생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회봉사활동의 기초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상담활동, 법률구조활동, 인턴쉽활

동, 견학활동 등으로 이루어지며, 그 중 인턴쉽 활동이 중심이 된다. 인턴쉽활동은 학생이 40시간 동안 법률회사 등 법률문기관에서 지도관의 지도아래 실제 발생한 민사, 형사, 헌법, 행정소송과 관련된 각종 소송서류의 작성 및 회의참석, 판결분석 등을 직접 수행한다.

13202049 법문서작성 Legal Writing

법률가로서가 작성하게 되는 법률문서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중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 소송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면들의 구조와 작성요령을 익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본 교과목에서는 변호사로서 작성하게 되는 소장, 고소장,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각종 신청서를 비롯하여 판사 또는 검사로서 작성하게 되는 판결문과 결정문 등의 관련문서에 대한 구조와 작성요령을 학습한다. 특히 이러한 소송 관련문서는 실제적인 법률요건 이외에 소송법적인 요건 및 절차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각종 문서작성에 필요한 실체법·소송법적 법률지식이 해당문서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학습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송 관련 문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이러한 소송관련 문서 외에도 시장에서 분쟁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계약서와 법률가로서 작성하게 되는 의견서 등 기타 다양한 법률문서를 구체적 분야별로 학습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해당문서를 작성하는 실무과정을 학습한다.

14203050 검찰실무1 Prosecution Practice and Criminal Procedure 1

검찰실무 I에서는 학생들이 장차 검사 또는 형사변호사, 형사재판부 법관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검찰실무를 다룬다. 또한 실제 사건 등 다양한 사례와 검사의 사건 처리 절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사절차법과 형사증거법을 보다 깊고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실무 II에서 기록교재를 중심으로 실무서류 검토, 작성 등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나, 검찰실무 I에서도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다양한 사례 제시와 토의를 통해 형사 분야 이외의 실무에서도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안의 쟁점 파악, 증거관계 분석 및 필요한 추가 증거의 파악과 수집, 정확한 사실인정, 논리적인 설득력 등을 배양한다.

14203051 형사재판실무 Practice of Criminal Trials

형사판결문의 작성 방식과 체계에 관한 교과목으로 증거능력에 관한 이해도 증진 및 유죄판결 등 형사판결문의 인작성능력을 구비하여 1심 공판절차의 개요 및 증거능력 강의를 통하여 형사사례연구, 유죄판결의 주문과 이유, 유죄이외 판결의 주문과 이유작성 능력을 학습한다.

14204054 헌법연습 The Constitutional Law Practice

본 교과목은 헌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 법률가로서 사회현실을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신문기사, 주변의 이야기 등을 통해 헌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적용되어야 할 헌법 규정, 판례, 헌법이론은 무엇인지 연구한다. 또한 헌법의 적용결과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절차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학습한다. 이를 위해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헌법소송에 대한 학습을 병행한다.

14204055 헌법판례연구 Study of Constitutional Precedent

본 교과목은 헌법 전범위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자 한 정형적이고 표준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선별하고, 그 판례를 분석·정리하여 헌법판례 분석능

력을 체계화하여 헌법이론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심화학습과목이다. 헌법 재판제도가 갖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적 효과를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개별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각 유형별 판례와 현재 국내외 헌법적 현안 그리고 이론적 쟁점 중에서 심화된 논의가 필요한 판례를 선정하여 학습한다.

14204028 행정법2 Administrative Law 2

행정작용은 적법하게 행사되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법익침해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분석하고 평가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행정구제제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 행정소송을 규율하는 법체계와 기능을 학습한다.
2. 행정심판을 규율하는 법체계와 기능을 학습한다.
3. 국가배상청구를 규율하는 법체계와 기능을 학습한다.
4. 손실보상청구를 규율하는 법체계와 기능을 학습한다.
5. 쟁점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향상과 행정구제제도 운영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함양한다.

14204082 행정법특강 Topic of the Administrative Law

본 교과목은 구체적인 행정사건에서의 실체법과 소송법의 결합 및 학문적 이론과 재판실무의 융합을 통해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실무기능 고양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따라서 행정법의 기초 및 심화 이론 과정에서 쟁점사항으로 나타난 점들을 가상의 또는 실제적인 법적 분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적합하지 않는 제도적 결함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며, 현실 생활에서의 활용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14205058 민법종합연습1 Comprehensive Seminar on Civil Law 1

민법 전체(특히 재산법)의 주요 법적논점과 사례를 학습한다. 본 강좌는 민법 판례를 기초하여 정선된 사례의 분석 및 해결을 통하여 법적논점을 체득할 수 있도록 연습강의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민법의 법리를 실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민사판례에 대한 분석능력을 제고하여 민법 전반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14205062 민사소송법종합세미나 Comprehensive Seminar on Civil Procedure Law

민사소송과정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변시 기출 및 모의 문제를 주제별, 연도별로 분류하여 구체적 사안해결능력을 향상하도록 한다. 수강생의 적극적 참여가 요청되며, 변호사 시험 및 변호사실무수행을 준비하는 성격을 갖는다.

14205033 민사절차법특강 Special Lecture in Civil Procedure

본 교과목에서는 사법상의 권리와 그 대상에 대한 집행절차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부동산과 동산 및 채권 등을 집행하는 방법과 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추상적으로 습득해 왔던 민법, 상법 등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사법의 권리관계질서를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을 목표로 한다.

14205060 민사실무1 Practical Civil Law 1

본 교과목은 실제 변호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실무 지식의 제공과 동시에 이러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중 기록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지식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무능력을 체득하게 함으로써, 장차 변호사로 업무를 행하게 될 학생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민사실무 1에서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을 위한 연습단계로서 각 소송유형에 따른 간단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연습 및 사례풀이를 살펴본다.

14205061 현대민사분쟁사례연구 Study of Modern Civil disputes

현대사회의 민사분쟁은 산업 구조의 급속한 변화 및 사회의 복잡다단화로 인하여 금융, 건설, 부동산, 공정거래, 보험 등 여러 전문분야의 쟁점과 결합하여 종합적인 분쟁으로 심화·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분쟁 해결에 참고가 되는 주요 판례 및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연구한다.

14206065 형사소송법특강 Special Lecture in Criminal Procedure Law

형사소송법특강은 형사소송법1,2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 쟁점과 사건에 있어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을 이해하기 위한 강의이다. 본 교과목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절차에서 그 이론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론과 판례를 기초로 하여 그 해결방법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14206063 형법연습 Seminar in Criminal Law

형법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현실적인 사례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형법연습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쟁점사례들을 형법적 시각에서 쟁점화하고 이를 형법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과목이다. 연습사례에는 형법총칙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범론, 미수론, 죄수론, 형벌론 등과 관련한 영역의 주요 논점사례들이 포함되며, 형법각칙의 개인적 법익, 재산적 법익, 사회적·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등과 관련한 영역의 주요 논점사례들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형법총론 및 각론에서 습득한 형법의 이론과 판례와 사례를 종합적으로 다룸으로써 형법 해석을 통한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14206066 형법특강 Special Lecture in Criminal Law

형법특강 교과목에서는 형법총각론과 특별형법의 주요 쟁점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이후, 이러한 쟁점들이 실제 형사법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학습한다. 실제 형법사례를 풀어가면서 실체법과 절차법의 기본원리와 쟁점에 대한 깊이있는 학습을 도모한다.

14206035 형사정책 Criminal Policy

형사정책은 범죄를 예방·진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사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입법·사법·행정상의 여러 가지 정책 등을 의미한다. 형사정책에서는 형사정책의 역사와 현재의 동향, 범죄현상과 원인, 범죄대책론, 범죄 및 범죄자의 유형별 대책 등을 강의한다.

14207066 상법2 Commercial Law 2

본 교과목은 상법 제3편 회사를 중심으로, 회사의 조직 및 관련 법률관계를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회사법의 다양한 법적 이론과 실제 사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의 개념, 능력 및 종류 관련 이론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활용도를 가진 주식회사의 설립, 기관 구성, 자본, 조직 개편 등을 보다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14209066 생명과학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n Biotechnology

본 교과목에서는 생명공학에 관한 다양한 지식재산권인 특허, 신제품보호제도, 영업비밀보호제도 등의 내용 및 각각의 차이점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한다. 또한 농부권과 전통지식 등 생물유전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새로이 부각된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영역이 어떻게 기존의 지식재산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관한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를 토대로 각각의 지식재산권의 한계에 관한 토론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물인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의 내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DDA에서의 논의 동향 등도 함께 고찰한다.

14209067 유전공학법 Genetic Engineering Law

본 교과목에서는 유전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국이 정하고 있는 다양한 유전공학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유전공학관련 법제는 크게 유전공학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과 그로 인한 규제라는 측면의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유전공학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및 기업의 이윤 확보 방안으로서의 각종 재산권의 의미를 분석하는 한편 유전공학기술로 인한 다양한 인체 및 환경관련 위해성 문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 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조약 및 개별 국가들의 법의 내용 및 이론들을 학습한다.

14208020 법사회학 Sociology of Law

법사회학은 법과 관련된 사회적 행위를 사회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규명하려는 학문분과로서 법과 관련된 사회적 행위에 주요한 원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제도, 문화, 계층, 젠더 등이 법적 행위에 갖는 영향을 탐구하고 분쟁해결수단으로서 법이 갖는 위상 및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 등의 주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법사회학 일반 이론에 대한 탐구 뿐 아니라, 법사회학 방법론에 대한 천착에 기반하여 우리 법현상을 다른 사회현상과의 관련하에 경험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최근의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법적 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4212073 집단노사관계법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

본 교과목에서는 근로권과 근로의의무 및 노동3권을 이해하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체계에 대하여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와 노동쟁의조정, 부당노동행위 등을 포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하여 이론과 판례 및 학설을 분석함으로써 집단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노사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전문 법조인의 능력을 함양한다. 나아가 교원노동조합법, 공무원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의 이론과 판례를 다룸으로서 노동법에 대한 전문 법조인의 능력을 함양한다.

14214104 국제법사례연습 A Case-Based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요 국제법원 또는 국내법원의 판결은 쟁점이 된 국제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줌으로써 국제법의 이해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된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국제법 쟁점에 대한 사법기구의 결정을 통하여 국제법의 현실적 운용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본 강좌는 조약법, 국가책임법 및 WTO법 관련 주요 사건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상기 세 분야는 변시 관련 국제법의 주요 범위인바, 이와 관련된 주요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은 물론이며, 변시 국제법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조약의 무효, 조약의 개정, 제3국과 관련된 국가책임, 국가책임상 위법성 조각사유,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WTO법에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의 의미, 일반 예외의 적법성 관련 주요 국제법 판례에 대한 고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4213074 세법각론 Particulars Tax Law

국민, 즉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는 최근 과세관청과 마찰 혹은 조세저항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세는 관련 조세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자에게는 조세분쟁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강의내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신고납부 등을 학습한다. 본 교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법총론, 민법, 상법 등의 관련 법률의 지식과 회계학적 마인드가 요구된다.

14215076 국제거래법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국제계약, 국제물품운송, 신용장거래, 수출입통관 등 국제상거래와 관련된 국제법무에 대한 실무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주요한 국제법원(法源)인 “유엔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과 관련 판례를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동 협약을 이해할 수 있는 국제상거래의 기본원칙을 학습한다. 먼저 국제계약, 운송 및 보험 관련 무역거래정형조건,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신용장거래에 관한 일반원칙을 학습하고, 유엔협약의 적용원칙, 물품매매계약의 성립,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협약규정을 분석하고, 관련 사례를 연구한다.

14216077 환경분쟁과소송실무 Environmental Disputes and Practices

많은 환경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의 성격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실무사례의 검토와 연습을 통해 이런 환경분쟁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이 과목의 학습목표이다.

14210039 中國法的理解 Understanding of Chinese Law

현대 중국법제의 전반적인 체계와 중국의 법(法源과 法段階)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법의 개별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기본 소양을 쌓는다. 연구대상은 중국법제의 형성, 중국법의 법계(法系)와 법원(法源), 중국의 사법제도(司法制度), 중앙행정기관의 입법, 지방행정기관의 입법 등을 중심으로 한다. 연구진행은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활용하며, 이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한다.

14208110 중국법 Law of China

초강대국인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매우 가깝고 또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있어서도 우

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고, 향후 중국은 21세기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이 예상되므로 중국의 민사관계법을 탐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중국법은 중국의 민법, 소송법, 상법, 지적재산권법, 기업법, 금융법, 파산법, 의료법, 중재법과 관련 판례 및 사례 등 민사관계를 중심으로 폭넓게 학습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 민사관계법의 기본원리와 법적문제를 상호 비교를 통해 학습하고 토론함으로써 중국적으로는 우리나라 민법의 이해도를 한차원 높이고자 한다.

14210070 日本法の理解 Comprehension of Japanese Law

본 교과목은 일본의 다양한 법제도를 인식하고 검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일본의 법조양성과정(법과대학원, Law School)을 비롯하여 최근의 형사사법제도 및 일본법 동향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우리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14210071 International Securities Transaction Law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기업거래와 통합자본시장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공시의무, 증권발행, 브로커 및 딜러에 대한 규제, 그리고 내부자거래에 대한 자본시장법상의 규제에 관한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i)증권 및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로서의 주식회사에 관한 구조적인 이해를 돕는 상법 조문 및 판례 학습, ii)상법 회사편과 자본시장법에서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학습, iii)국제증권거래에서의 공시의무, 증권발행, 브로커 및 딜러에 대한 규제, 그리고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규제내용을 학습한다.

13202078 모의재판 Moot Court

본 교과목에서는 민사·형사 재판에 관한 모의적인 상황 속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담당해보게 하여, 재판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소송실무에 관한 기초지식을 재판절차에서 구현하도록 하여 소송절차상의 각종 서류작성과 법률가로서의 법정에서의 활동 등의 소송행위를 실제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체험하도록 한다. 민사와 형사재판을 각 8주씩 할당하고 부여된 사례를 검토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분담하는 례 플레이(Role Play)로 진행하며 강평을 통하여 보다 타당한 소송수행의 방법을 익힌다.

14203079 검찰실무2 Prosecution Practice and Criminal Procedure 2

검찰실무II에서는 기록 교재를 중심으로 실무기록 파악능력 및 공소장, 변론요지서 등 법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서류 작성능력을 배양한다. 다양한 사례 제시와 토의를 통형사 분야 이외의 실무에서도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안의 쟁점 파악, 증거관계 분석 및 필요한 추가 증거의 파악과 수집, 정확한 사실인정, 논리적인 설득력 등을 배양한다.

14203080 민사재판실무 Practice of Civil Trials

민사이론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본으로 민사재판절차,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법원의 역할과 기능, 민사소송의 증거조사절차와 사실인정, 판결체계와 소송요건, 판결주문과 이유 등 판결문의 작성방식과 체계에 관하여 학습한다.

14204058 행정법3 Administrative Law 3

행정법의 기본적인 개념과 행정의 주요한 행위형식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고 있는 것을 전제로서 개별 행정작용법을 이해함으로써 행정소송에서 본안의 주장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발전적인 과제로서 실체법적·절차법적인 법규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1. 행정조직을 규율하는 법체계와 기능을 학습한다. 2. 지방자치를 규율하는 법체계와 기능을 학습한다. 3. 개별 행정작용법(경찰행정법, 경제행정법, 개발행정법, 환경행정법 등)에 관한 법체계와 기능을 학습한다. 4. 관련 쟁점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향상과 행정작용의 태양을 새로운 시각에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규범체계로서의 행정작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14204057 행정법연습 Study of Administrative Law Cases

행정법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을 연습한다. 이를 통하여 행정법 이론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례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연습대상은 행정법 기본이론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대상사례의 법리적 논점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분석도 연습대상으로 삼는다. 연습방법은 크게 세 단계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먼저, 대상사례를 풀어본다. 다음으로, 사실관계의 특징과 그것이 의미하는 법리적 의미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사례에 적용된 이론을 정리한다.

14204084 공법실무 Legal Writing on Public Law

헌법재판과 행정재판의 실무를 익히기 위한 기본적인 방식으로 헌법재판과 행정재판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장 및 답변서 등 송무에 필요한 문서 작성 실무를 익힌다. 이를 위한 실체법적 그리고 절차법적 지식을 기반으로 실제 또는 모의 사례해결방안을 학습한다. 또한 헌법과 행정법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14205085 민법종합연습2 Comprehensive Seminar on Civil Law 2

민법종합연습1의 학습내용을 토대로 보다 심화된 법적논점과 사례를 검토한다. 특히 구체적 분쟁사례 분석을 통하여 법적논점을 추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 및 응용하는 연습을 한다. 본 강좌는 민법 전반에 대한 법률능력을 배양하고 사례해결 및 응용능력을 함양함에 목적이 있다.

14205091 민사소송법연습 Practice of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 연습은 학습된 민사소송법 이론을 구체사례에 적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강생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교과목으로, 기출문제 및 전형적 판례, 새로운 판례를 인용하여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개념, 소송과정 및 복합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14205088 민사실무2 Practical Civil Law 2

본 교과목은 실제 변호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실무 지식의 제공과 동시에 이러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중 기록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지식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무능력을 체득하게 함으로써, 장차 변호사로 업무를 행하게 될 학생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민사실무 2에서는 실제 소송유형에 따른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여러 문제가 복합된 실제와 유사한 사례에서 변호사로서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 및 대처방안을 살펴본다.

14206095 형사소송법연습 Seminar in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은 신속하게 적정절차를 통하여 실제진실을 발견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기술적·추상적 성격으로 인하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절차에서 그 이론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교과목은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론과 판례를 기초로 하여 그 해결방법을 함양한다.

14206091 형사법의쟁점과사례 Cases and Problems in Criminal Law

본 교과목에서는 실제법인 형법과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등이 결합되어 있는 사례를 통해서 주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형사문제의 종합적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14206092 인권보호와피해자학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Victimology

인권보호와 피해자학은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구제와 피해자의 보호를 중점적으로 취급한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하게 되면 범죄자 및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은 소홀하게 된다. 현재에는 국가의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이념이며, 20세기 후반부터는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국가·사회의 주요과제로 부각되었다. 인권보호와 피해자학에서는 인권보호와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한 사례 및 관련 법률 등을 강의한다.

14206093 형사실무 Criminal Advocacy Practice

이 교과목은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보석허가청구서, 변론요지서, 상소이유서 등 중요서류의 작성 방법과 증인신문 등 각종 변호활동의 요령을 습득하고, 형사절차 전반을 이해하여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14207067 상법3 Commercial Law 3

본 교과목은 어음·수표법 및 보험해상법을 학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어음·수표법에서는 어음 및 수표의 발행에서 지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음행위와 수표행위를 학습함으로써 어음, 수표의 역할과 관련 법체계를 학습한다. 한편, 보험해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의의 및 체결,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통보험약관, 고지의무,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자대위, 책임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및 해상법과 관련한 중요 법리를 학습한다.

14207096 국제금융거래법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s: Law and Regulation

국제금융거래법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 협약(CISG)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별도의 영역으로 주식회사·은행·증권·보험회사의 주식 및 채권발행뿐만 아니라 이미 발행된 증권 및 채권에 관한 전매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금융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본 교과과정에서는 i) 주식회사의 금융방법(사채 및 주식발행)에 관한 상법상의 규제, ii) 주식회사의 금융방법으로서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상법상의 규제, iii) 보험회사에 관한 상법 규정 및 판례, iv) 사채 및 증권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어음·수표에 관한 상법 규정 및 판례, v) 기 발행된 증권 및 채권 전매에 관한 자본시장법 및 외국 주요국의 규제를 법조문 및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14209097 국제생명과학법 International Biotechnology Law

본 교과목은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법분야가 어떤 변화를 거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조

약 및 관련법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분쟁을 불러 일으키는 다양한 국제 조약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여 실제 국가간 협정 등의 법적 문제와 분쟁이나 협상 등의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특히 WTO 출범의 시기가 생명공학제품의 상품화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WTO에 제소된 사례(미국-EU간의 생명공학제품 분쟁 등) 및 최소한 2개국 이상이 얽혀있어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동향분석에도 유용할 것이라 예측되는 사례 또는 판례(슈마이저 판례, 독일 벌꿀 사례 등)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14209098 생명의료법세미나 Seminar of Biomedical Law

이 교과목은 장기이식, 생식의료, 유전자 조작, 연명치료 중단 등의 생물학의 진전에 따른 법적 문제를 다룬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생명윤리와 인간의 존엄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한다.

14209069 의료소송실무 Medical Litigation Practice

본 교과목에서는 의료와 관련된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에 대하여 실제 소송실무에서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의료소송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과 민법, 형사소송법과 형법을 종합하여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실무적 감각을 배양한다.

14208008 비교법 Comparative Law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폐쇄적인 법인식을 지양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법체계를 공부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 법질서가 가지는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계 형성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대륙법계, 영미법계, 종교법계 등에서 각국의 구체적 법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헌법, 민법, 형법에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혹은 구체적으로 나라별로 어떠한 법률상의 그리고 도그마틱 상의 차이가 나타나 있는지를 규명한다. 또한 법계수, 법통합 등 비교법의 중요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히 우리나라가 어떠한 법제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계수하였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14210099 International Oil & Gas Transaction International Oil & Gas Transaction

대규모 석유회사들은 이미 사내에 대규모의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전문화되고 특화된 전문인력을 통해 법적 위험성을 줄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석유·가스개발 분야의 법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 교과목은 국제에너지 개발 및 거래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동시에 관련 분쟁의 해결 능력을 갖춘 변호사의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4212101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Law

본 교과목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인격권과 생존권 등의 개념과 내용을 토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의미와 제도를 분석 및 검토하여 관련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로부터 사회보장법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전문법조인의 능력을 함양한다. 특히 사회보장 중 4대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중점적으로 이론과 판례를 다룬다.

14214076 국가책임법연구 Studies on State Responsibility

조약 또는 관습국제법의 법원에 따라서 국제법 주체는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특히 국제의무의 불이행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의무의 이행에 관한 법규범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은 상기한 국제의무의 불이행에 관한 국제법의 전반적 규범체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이해는 국제법의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본 강좌는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의 주요 쟁점을 다룬다. 국제의무 위반의 개념,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양태, 타국과 관련된 국가 책임, 위법성 조각사유, 국가책임의 해제 방법, 손해 배상 방법, 국가책임의 추궁, 대응조치의 적법성 요건 등에 대한 쟁점의 고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4217120 경제법 Economic Law

경제법은 자본주의의 발달에서 나타나는 기업집중방지·독과점해소·소비자보호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정의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본 강의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광범위한 경제법의 내용을 학습하고 실제 사례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14204104 공법종합사례연구 Case and Commentary on Public Law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된 법률로서 헌법의 기본가치는 필연적으로 행정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상호관계를 가진다. 행정법의 문제는 헌법적 차원에서 유기적 조명이 요청된다. 본 교과목에서는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公法學에서의 학설의 경향, 판례형성의 추이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부적합한 제도적 결함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안책을 제시하며, 현실 생활에서의 활용능력배양을 목표로 한다.

14205105 민사법종합사례연구 Seminar : Advanced issues in Civil Cases

본 교과목은 민사법 전반에 대한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조사·분석하여 소송실무에 적용되는 쟁점을 추출하고, 법리전개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연습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사법률관계의 기본적 요소인 권리관계변동, 물권변동, 채권의 발생·효력·소멸, 계약법, 불법행위법 및 가축법에 대한 기본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로부터 민법 전반에 대한 기본 법리 및 쟁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법률적 사고능력 배양하여 구체적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14206106 형사법종합사례연구 Case Studies in Criminal Law

본 교과목에서는 실체법인 형법과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등이 결합되어 있는 종합적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하며, 이를 통하여 형사 문제에서의 종합적·창의적 해결능력을 배양한다.

14206094 형사실무연습 Advanced Criminal Advocacy Practice

이 교과목은 형사실무 교과목에 이어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보석허가청구서, 변론요지서, 상소이유서 등 중요서류의 작성방법과 증인신문 등 각종 변호활동의 요령을 습득하고, 형사절차 전반을 이해하여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며, 이를 보다 구체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연습한다.

14207068 상법연습 Integral Studies of Commercial Law

본 강의는 상법총칙/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등 상법 과목 전반에 걸친 법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여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법적 사고를 형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강의에서는 문제 기반형 학습 방식(Problem Based Learning)을 채택하여 상법의 중요 쟁점과 관련 있는 판례 및 가상 사례들을 선별하여 상법의 기본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이해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구체적 분쟁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및 체계적인 법적 검토를 위한 능력을 함양한다.

14207109 사모투자전문회사법 Private Equity Fund Regulation

본 교과목에서는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탈의 법적 형태인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적 지식을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i)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 형태로 활용가능한 상법상의 합자회사·합명회사·유한책임조합·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에 관한 상법 조문 및 판례 학습, ii)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규정 및 판례에 관한 학습을 한다.

14210112 Mineral Law Mineral Law

이 교과목은 경제와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인 광물자원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법적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여, 관련되는 법적 분쟁의 해결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4210113 Mutual Fund Regulation Mutual Fund Regulation

뮤추얼펀드는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로서 주식발행을 통해 주주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산을 자산운용사에 맡겨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다. 본 교과과정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뮤추얼펀드에 관한 규정 및 판례를 영어로 학습한다.

14210114 Law of Global Governance Law of Global Governance

○ 강의진도범위 : 본 강좌는 세계화의 영향에 따른 국제법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주요 범위로 한다. 세계화와 주권국가, 세계화와 국제공동체, 세계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등에 대한 일반적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 교과목의 성격 : 본 강좌는 주권국가로 이루어진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주체가 공존하는 국제공동체로의 전환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에 대한 고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회현상의 변화가 국제법의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국제관계 및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주목적으로 하는 강좌이다.

○ 주요 내용 : 본 강좌는 세계화의 국제법 및 국제관계학에 끼친 영향에 대한 분석, 국제사회에서 국제공동체로 전환이 주는 의미, 세계 시민사회의 보호를 위한 국제법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4212116 노동법연습 Exercises in Labour Law

노동법의 본질과 개념 및 노동기본권을 관련 법률규정을 통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취업규칙, 근로시간, 임금, 해고, 단체교섭,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행위 등의 노동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노동법분야의 중요판례 및 학설의 분석 및 문제해결능력을 법해석에 따른 노동법을 파악하여 현실에서의 각종 시험을 대비하여 노동법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14213117 조세법연습 Tax Law Practice

본 교과목은 조세 전반의 실제 사례와 판례를 조사 분석하여 실무에 적용되는 쟁점사항을 추출하고 법리 전개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습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본 교과목은 그동안 세법총론·세법각론에서 학습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세법에 관한 법적 판단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 교과목의 강의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주요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한다.

14215118 국제사법 Private International Law

외국인, 외국기업 등과 관련된 소송 또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문제로 인한 소송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먼저 국제재판관할권 유무를 판단하고, 적용할 법을 정한다. 이러한 국제민사 및 상사 소송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규칙과 준거법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것이 국제사법이다. 이에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재판관할권, 외국판결승인·집행과 관련된 국제민사소송원칙과 준거법 지정, 외국법의 적용 등 준거법 확정 원칙을 학습한 후, 물권, 채권, 친족법, 상속법, 상사법 등 개별적인 법률관계에서 어떻게 준거법을 파악하는지를 배우고, 관련 판례분석과 사례연습을 통해, 국제 민사 및 상사 분쟁에 적용되는 관련 준거법을 확정할 수 있는 법무지식을 습득한다.

Ⅶ. 관련규정

2-5-1.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정 2008. 09. 16

개정 2021. 09.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원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다문화 국제사회에서의 법적 문제를 합리적, 균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법률문화 발전과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이며, 도덕적 품성 및 봉사정신을 갖춘 우수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2조의2(특성화 전략)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의생명과학법을 특성화 분야로 둔다.<본조신설 '18.12.04>

② 특성화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장 학위과정 및 정원

제3조(학위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전문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에 전문박사학위과정과 학술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4조(입학정원)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각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정부직제변경(교육부) '13.06.03>

② 법학전문대학원 각 학위과정에의 편입학 또는 재입학은 각 과정별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의 입학정원은 정원 외로 따로 정한다.

제3장 입학 및 등록

제5조(입학시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년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석사학위과정

가. 국내 4년제 대학교의 학사학위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가목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2. 전문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에서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가목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3. 학술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국내에서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다. 법령에 의하여 가목 또는 나목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②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삭제 '09.5.27>

2. <삭제 '09.5.27>

3. <삭제 '09.5.27>

4. <삭제 '09.5.27>

③<삭제 '09.5.27>

제7조(입학전형) ①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 정한 사항에 따라 선발한다.<개정 '14.12.24>

1. 일반전형은 학사학위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2. 특별전형은 학사학위취득(예정)자 중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개정 '11.07.28, '18.12.04>

②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개정 '18.12.04>

③ 전문석사학위과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전형하고, 별도로 논술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신설 '18.12.04>

④ 전문석사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학부성적,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에 따른 적성시험(LEET)의 결과, 입학전형이 정하는 공인된 외국어시험 성적, 기타 대학원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8.12.04>

⑤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석사과정의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3분의 1 이상, 원광대학교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8.12.04>

⑥ 기타 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18.12.04>

제7조의2(입학전형사항의 구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필수전형사항으로 학부성적, 법학적성시험, 외국어능력을 반영한다.<본조신설 '18.12.04>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입학할 수 있도록 필수전형사항 외에 지원자의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 다양한 전형 요소들을 활용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전형에서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은 일반전형에서 제2조의2제1항에서 정한 특성화 분야와 관련하여 우수한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서류평가에서 이를 긍정적 평가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제8조(입학허가와 취소) 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은 본 대학교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2.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제8조의2(입학전형계획의 수립·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생 선발 전에 공표한다.<본조신설 '18.12.04>

1.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2. 특별전형의 선발대상 및 기준
3. 기타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 사항

제9조(편입학) ①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수에서 재학생 수를 뺀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내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석사학위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에게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등록 및 등록금 반환)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각 학위과정 학생은 제15조의 수업연한기간 중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1.07.28>

② 납입된 등록금의 반환은 교육부령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정부직제변경(교육부) '13.06.03>

③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징수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 ④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학기가 시작된 이후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 ⑤ 학점교류를 신청한 자의 등록금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지원절차)** 법학전문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와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제1절 수업, 교과과정 및 수료학점 등

- 제12조(학년도·학기)** ①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다만, 학사운영상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3. 계절학기 :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 개설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3조(수업일수)** ① 각 학위과정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개정 '19.10.01>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때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15.12.29>
 ③ 당초 수업시간표에 따른 수업일(주)수를 단축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하거나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시간) 충족 이후 조기종강을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초빙교수를 초청하여 계절 학기에 개설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수업일(주)수를 단축 운영할 수 있다.<신설 '15.12.29>
- 제14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국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5월 15일), 원불교기념일[대각개교절(4월 28일), 6.1대재(6월 1일)]로 한다.
 ②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른다.
 ③ 임시휴업일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무수습 및 수업을 할 수 있다.<개정 '11.07.28>
 ⑤ 휴업일의 변경 또는 임시 휴업일에 관하여는 그 때마다 공시한다.
- 제15조(수업연한)**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은 3년(6학기)으로 하고, 전문박사·학술박사 학위과정은 2년(4학기)으로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과정은 1년(2학기)으로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및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에 따라 정한다.
- 제16조(재학연한)** ① 전문석사학위과정 재학연한은 5년(10학기)을 전문석사학위과정은 8년(16학기), 전문박사·학술박사학위과정은 4년(8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4.06.02, '16.02.23>
 ②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7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대학(원)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비정규교육프로그램을 둘 수 있다. 비정규교육프로그램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8조(학기당 수강학점)** ① 매 학기 전문석사학위과정은 21학점, 전문박사·학술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개정 '18.12.04>
 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수강기준학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09.5.27>

제19조(졸업이수학점)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전문석사학위과정의 경우 92학점으로 한다.<개정 '18.12.04>

② 전문박사·학술박사학위과정의 이수학점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졸업이수학점 중 최소 2학점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전공영역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항신설 '14.01.02>

제20조(필수실무교과목)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을 필수실무교과목으로 한다.

② 필수실무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다.

③ 실습과정에서는 임상과목(리걸클리닉)과 현장학습과정을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11.01.27>

제21조(필수교과목)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교과목과 학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필수교과목의 변경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2조(학점인정) ①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대학에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하여 필요한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8.12.0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편입학을 제외하고 15학점 이내로 한다.

④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의2(방학중인턴쉽 학점인정) ① 방학 중 이수한 인턴쉽은 해당기관이 발급한 이수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방학 중 인턴쉽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신설 '11.11.25>

제22조의3(학위논문 학점인정) 전문석사학위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제28조 제1항의 자격자와 동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한 자는 2학점을 인정한다. <조신설 '11.11.25>

제23조(강의시간표 및 수강신청) ① 매학기 강의시간표는 수강신청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매학기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시험성적 및 수료

제24조(시험방법·시기)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매 학기별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일정 지정기간에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0.12.07, '11.07.28, '15.07.30>

② 시험은 필기, 구술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객관적 평가기준 및 근거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5.07.30>

③ 기타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사항, 학습태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결정하되,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표개정 '11.02.28>

등급	점수	평점
A+	97 ~ 100	4.3
Ao	94 ~ 96	4.0
A-	90 ~ 93	3.7
B+	87 ~ 89	3.3
Bo	84 ~ 86	3.0
B-	80 ~ 83	2.7
C+	77 ~ 79	2.3
Co	74 ~ 76	2.0
C-	70 ~ 73	1.7
D+	60 ~ 69	1.3
F	60점 미만	0
P	합격	
NP	불합격	

② 기타 성적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유급) ① 매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2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학사경고한다.<개정 '11.02.28, '14.09.05>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되며 해당학년(2개 학기)에 취득한 B0(3.0) 이하의 학점은 모두 무효로 한다.<신설 '11.02.28>

1. 매학년(2개 학기)에 취득한 전체학점을 통산한 평균평점이 2.2 이하인 자<개정 '11.02.28, '14.09.05>
2. 제20조와 제21조에 규정한 필수교과목 중 1과목 이상의 성적이 F인 자
3. <항신설 '10.12.07, 개정 '11.02.28, 삭제 '11.07.28>
4. 본인이 원하는 경우<개정 '11.02.28>
5.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진급시험에 불합격한 자<신설 '18.12.04>

③ 제2항 제1호에서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학기의 연속으로 본다.<신설 '11.02.28>

④ 제1항의 학사경고와 제2항 제1호의 유급을 산정하는 경우 계절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다음 학기 성적에 포함하고, 학부에서 이수한 성적·외국대학에서 받은 학점은 제외한다.<신설 '11.02.28, 개정 '11.07.28>

⑤ 기타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의2(진급시험제도) ① 3학년을 제외한 재학생(다음 학기 복학 예정인 휴학생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학년별 진급시험을 실시한다.<본조신설 '18.12.04>

② 진급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수료인정 및 시기) ① 각 학위과정별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취득학점의 인정은 해당학기에 개설된 강의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고 매학년 2개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2를 초과하여야 한다.<개정 '11.02.28, '14.09.05>

③ <삭제 '11.02.28>

④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학년말로 하며 학년단위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11.02.28>

제28조(졸업시험·학위논문 및 종합시험) ① 전문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졸업시험에 응시하거나 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어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11.11.25>

② 전문박사·학술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11.11.25>

제29조(학위수여) ① 전문석사학위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제28조 제1항의 자격자와 동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11.07.28, '11.11.25>

② 학위는 학년도 말에 수여한다.<개정 '11.07.28>

③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고 수료증을 교부한다. <신설 '11.07.28, 개정 '11.11.25>

④ 전문석사학위 및 전문박사·학술박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11.07.28>

제30조(학위수여의 취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제3절 휴학·복학·재입학·제적

제31조(휴학) ① 학생은 입학 후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기타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09.5.27>

②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강 후 수업일수 4분의1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09.5.27>

③ 휴학기간은 학년단위로 한다. 다만, 1년을 초과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09.5.27, '11.02.28>

④ 병역 또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3항의 휴학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09.5.27>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1학기 유급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한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다. <신설 '15.12.29>

제32조(복학 및 재입학) ①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 또는 제적당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 및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 학위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15.06.04>

제33조(재입학 학점인정)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34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학력 또는 경력을 위조한 자
2.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4. 재학연한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개정 '11.02.28>
5. 징계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이 의결된 자
6. 3회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 또는 통산 2회 유급된 자<개정 '11.02.28>
7. 자퇴원을 제출한 자<개정 '15.07.30>
8. 사망한 자<개정 '15.07.30>

제35조(자퇴)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를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공개강좌 등

제36조(공개강좌) ① 교육과정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인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7조(연구과정) ① 연구과정에 입학할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필요에 따라 소정의 납입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위탁생)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위탁교육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생의 위탁교육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9조(특별청강생)**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교류·협력대학(원)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류·협력대학(원) 학생에 대하여 전형한 후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 청강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특별청강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교류와 협력

- 제40조(다른 법학전문대학원과의 교류)**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연구상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후 교수연수, 학생 및 학점을 교류할 수 있다.
- ② 교류협정을 체결한 법학전문대학원과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1조(실무수습기관과의 협약)**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수습교육과 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외 법률관련 실무수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11.07.28>
- ② 협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학생지도 및 장학제도

- 제42조(학생지도)** 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제 규정을 준수함을 물론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 ②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학업관련 상담 및 애로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센터를 둔다. 학생지도센터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항신설 '11.07.28>
- ③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적성, 실무수습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경력개발센터를 둔다. 경력개발센터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항신설 '11.07.28>
- ④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임상법학 및 공익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리걸클리닉센터를 둔다. 리걸클리닉센터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항신설 '13.06.03>
- 제43조(학생회)** 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학생회를 둔다.
- ② 학생회 운영 및 회칙에 관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하며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44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45조(징계)** ① 각 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의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징계할 수 있다.
-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으로 구분한다.
- ③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증거의 제출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기타 학생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6조(장학금)**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직제와 위원회

제1절 직 제

- 제47조(직제)** 법학전문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경력개발센터장, 리걸클리닉센터장, 지도교수 등의 전임교원을 둔다.<개정 '10.12.07, '13.06.03, '21.09.01>
- 제48조(대학원장)** ①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전임교원 및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임면과 임기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른다.
- 제49조(교무부원장)** ① 교무부원장은 교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보좌한다.<개정 '10.12.07, '21.09.01>
- ② 교무부원장의 임면과 임기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른다.<개정 '10.12.07, 11.02.28,

'21.09.01>

제49조의2(학생부원장) ① 학생부원장은 학생지도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보좌한다.<본조신설 '21.09.01>

② 학생부원장의 임면과 임기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른다.

제50조(지도교수) ①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지도교수를 둔다.<개정 '13.06.03, '21.09.01>

② 지도교수의 자격과 직무 및 학생지도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1.09.01>

제51조(연구소)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법학과 관련한 사회적 지식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부설 연구소를 둔다.

②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법학전문대학원위원회

제52조(구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에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을 포함하여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0.12.07, '21.09.01>

③ 대학원위원회의 구성은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보직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53조(기능) ①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개설 및 개편에 관한 사항
3.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도교수 선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및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지위습득·변경에 관한 사항
7.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8.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9.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
10. 국제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
11.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12. 법학전문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14. 학생 결원의 충원에 관한 사항<신설 '15.06.04>

②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가부동수일 경우에 한하여 결정권을 갖는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위원 3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절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제54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관리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18.12.04>

제55조(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및 이의제기 등 처리)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제12조의 2에 의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지원자의 이의제기 또는 민원을 심의하는 입학전형 민원해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02>

③ 입학전형 민원해소위원회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위촉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항신설 '20.09.002>

제4절 교육과정심의위원회

- 제56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개발과 교육방법개선을 위한 심의기구로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절 자체평가위원회

- 제57조(평가위원회의 평가)**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8조(자체평가)**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의 개선을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때로부터 3년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9조(대외평가)**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연구수준의 유지·향상과 교육·연구활동 및 기타 운영사항에 관한 개선을 위하여 대외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대외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 제60조(개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본 학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개정안을 입안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학칙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③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은 학칙개정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친 학칙개정안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하고 교육부에 보고한다.<정부직제변경(교육부) '13.06.03>
④ 기타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 제61조(시행규칙)**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2조(준용규정)**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본 대학교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08.09.16)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0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의 진급시험은 2011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01.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2.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28)

이 학칙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3.06.0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1.0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4.06.0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9.0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유급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6.0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7.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04)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01)

이 학칙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0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9.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2.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정 2008. 09. 16

개정 2021. 09.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학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정원) ① 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의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석사학위과정 : 60명

2. 연구과정 : 20명

② 비법학사 및 타대학 출신 학위취득자의 비율은 입학정원의 3분의 1 이상 유지하며, 신체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 의한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7% 이상을 유지한다.<개정 '19.05.09.>

③ 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의 입학정원의 조정은 학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11.07.28,정부직제변경(교육부) '13.06.03>

제2장 입 학

제3조(입학전형의 유형) ① 입학전형의 유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한다.

② 일반전형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③ 특별전형은 학사학위취득(예정)자 중 신체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개정 '11.07.28, '19.05.09.>

제4조(입학지원서류) 학위과정 지원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원서

2. 출신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출신대학 전(全) 과정 성적증명서

4. 주민등록 초본

5.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및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증빙서류(특별전형에 한함)

6. 위탁생은 소속기관장의 취학승인서

7. 기타 법학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및 자료

제5조(입학시험) ① 학칙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학전형을 시행한다.

1. 일반전형은 적성시험성적, 학부성적, 외국어능력시험성적,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봉사활동 및 사회활동실적, 구술면접 및 논술고사 점수 중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택하여 반영한다. 다만, 의생명과학법 등 연구과정 전형은 따로 정한다.<개정 '09.05.27>

2. 특별전형은 1호의 본문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② 전항의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입학전형업무 참여자는 가족 및 이해 관계자가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전형업무에서 제척, 회피, 기피하여야 하며, 그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19.05.09.>

제5조의 2(이의제기 등 신청 및 처리) ① 입학지원자가 입학전형과정 및 그 결과에 이의 또는 민원이 있는 경우 해당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 또는 민원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입

학전형 민원해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02>

- ② 이의제기 등 처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및 입시자체감사위원회의 각 1인의 위원으로 검토기구를 구성하며, 이 검토기구는 입학전형의 제반 자료 등을 검토·확인 후 입학전형 민원검토확인서를 작성하여 민원해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민원해소위원회는 전항의 민원검토확인서 및 입학전형자료를 토대로 접수된 이의 또는 민원내용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편입학) ① 편입학 지원자격은 국내·외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석사학위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에 한하며, 학위과정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수에서 재학생 수를 뺀 인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하되, 전형방법은 일반전형으로 실시한다.

② 편입학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편입학원서
- 2. 대학졸업증명서 및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 3. 법학전문대학원성적증명서
- 4. 이수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5. 기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자료

③ 편입학생이 편입전 전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④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장 수업연한, 이수과목, 학점 및 수료

제7조(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재입학생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퇴학 또는 제적된 기간은 제외한다.

제8조(교과목 이수구분 및 취득학점) 학위과정은 필수실무교과목, 전공필수교과목, 전공선택교과목으로 구분하되, 총 9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19.05.08>

제9조(필수교과목)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교과목은 필수실무교과목을 제외하고는 법학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필수교과목의 학점은 35학점 이내로 한다.

제10조(비정규교육프로그램) ① 본 대학교 건학이념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비정규교육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11.07.28>

② 비정규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교과목개설) ① 교무부원장은 학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과목 중에서 매 학기 시작일 2월 전에 당해 학기 과목설강계획서를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1.09.01>

②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매 학기 시작일 6주 전까지 종합시간표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 개설을 위한 최소 수강신청 학생인원은 법학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규로 정한다.<개정 '10.12.07, '11.07.28, '14.06.02>

제12조(교과목 담당교수)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교내·외의 전임교원
- 2. 변호사 또는 학술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3.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13조(시험) <삭제 '15.07.30>

제14조(출석) ① 매 학기 출석상황이 수업일수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해당 교과목 성적은 자동적으로 F처리 된다.

② 공무출장 및 질병 등에 의한 결석자의 공결처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15조(출석관리) 출결관리는 해당 교과목 수업담당교수의 출석부에 의해 관리한다.

제16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1주 전에 수강신청서를 교무부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1.09.01>

② <항삭제 '20.09.02>

③ 수강신청의 변경은 개강 후 2주 내에 수강신청 변경원을 교무부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1.09.01>

제17조(강사위촉) 교과운영상 강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2월 전에 강사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강의시수 제한) ①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은 주당 6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대학교 학부과정의 법학부 존속기간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의 강의담당시수는 학부과정의 법학부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에 한하여 3시간 이내에서 예외로 인정한다.<개정 '11.02.28>

제19조(중복이수금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 재학생은 동일과목을 중복이수 할 수 없다.

제20조(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 재학생이 재학기간에 한하여 법학전문대학원과 교류가 있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대학원에 개설한 동일 또는 유사과목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당 6학점, 통산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재학생이 재학기간에 한하여 다른 국내·외 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점인정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서
2.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성적증명서
3.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재입학

제21조(등록)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생은 졸업시험, 실무수습 및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5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휴학) ① 휴학은 가사휴학, 병가휴학 및 군휴학으로 한다.

② 휴학예정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정양식의 휴학원에 사유서, 진단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부원장의 확인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에 의한 휴학은 종합병원에서 발부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1.09.01>

③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휴학을 할 수 있다.

④ 군입대로 미리 휴학할 경우에는 일반 휴학원을 제출한 후 입영 14일 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복학) 복학예정자는 매학기 종강 후부터 개강 후 4주 이내에 휴학확인증을 복학원에 첨부하여

교무부원장의 확인을 얻어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1.09.01>

제24조(재입학) ① 학칙 제34조 제1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② 재입학 허가자는 해당학기 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학위과정에 재입학을 한 학생에게는 퇴학 및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25조(공개강좌) ①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정상적인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법률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무 학습을 원하는 자를 위한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09.5.27>

② 법률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지도하기 위한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09.5.27>

③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 해당학기 납입금의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6조(연구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과정 지원자의 구비서류는 본 규칙 제4조의 전문석사학위과정 입학지원서류에 준한다.

③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구과정의 이수학점은 한 학기에 6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27조(실습과정) <삭제 '11.01.27>

제6장 학력진단평가 및 진급시험<장제목 개정 '18.12.04>

제27조의2(목적) 재학생의 학력을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변호사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학력진단평가와 진급시험을 실시한다.<신설 '10.12.07, 개정 '11.07.28, '18.12.04>

제27조의3(응시의무) ① 모든 재학생은 학력진단평가와 진급시험에 성실한 태도로 응시해야 한다.<신설 '10.12.07, 개정 '11.07.28, '18.12.04>

② 사고, 질병 등 별표 1에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로 학력진단평가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실시 전에 별지 1의 불응시사유서를 학생부원장장에게 제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또는 추인을 한다.<신설 '18.12.04, 개정 '21.09.01>

③ 사고, 질병 등 별표 1에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로 진급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실시 전에 별지 2의 불응시사유서를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또는 추인을 하며, 허가 또는 추인을 받은 경우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신설 '18.12.04>

제27조의4(응시대상) ① 학력진단평가는 재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신설 '10.12.07, 개정 '11.07.28, '18.12.04>

② 진급시험은 1학년과 2학년 재학생(다음 학기 복학 예정인 휴학생을 포함한다)을 그 대상으로 한다.<신설 '18.12.04>

제27조의5(시험과목) 학력진단평가와 진급시험은 변호사시험교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한다.<신설 '10.12.07, 개정 '11.07.28, '18.12.04>

제27조의6(시험시기, 시험범위 등) ① 학생부원장은 진급시험의 시기와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매년 초 진급시험의 구체적 일정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신설 '10.12.07, 개정 '11.07.28, '18.12.04, '21.09.01>

② 학생부원장은 매년 초 학력진단평가의 시기와 구체적인 시험범위를 정하여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8.12.04, 개정 '21.09.01>

제27조의7(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27조3의 의무를 위반한 학생은 장학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10.12.07, 개정 '11.07.28>

제27조의8(학력진단평가의 졸업시험 반영) 학력진단평가 성적은 졸업시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18.12.04>

제27조의9(진급시험 합격 및 인준) ① 진급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40%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선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18.12.04>

② 진급시험 중 1과목이라도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공고된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학원위원회가 불합격으로 결정한 학생은 해당 학년을 유급한다.

제7장 외국어시험

제28조(외국어시험)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생은 재학연한내에 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삭제 '11.07.28>

③ 외국인학생의 모국어가 영어인 경우 한국어, 독일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 중 택일하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11.07.28>

④ <삭제 '11.07.28>

⑤ 법학전문대학원이 인정하는 영어시험(TOEIC, TOEFL, G-TELP, TEPS 등) 성적우수자는 영어시험과목을 면제한다.

⑥ 성적우수자의 기준은 법학전문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29조(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 응시자격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제30조(응시절차 및 시기)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위과정생은 소정 기일 내에 교무부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응시원서와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1.09.01>

② 외국어시험은 매 학년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31조(출제위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본 대학교 해당 전임교원에게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제32조(합격 및 인준) ① 외국어시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합격선을 조정하여 사정할 수도 있다.<개정 '11.07.28>

② 대학원위원회는 외국어시험 결과를 인준함으로써 합격여부를 확정한다.

제33조(재응시)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제8장 종합·졸업시험

제34조(졸업시험) ① 외국어시험을 통과한 자는 졸업시험 응시 또는 졸업논문 제출자격이 있다.

② <항신설 '10.12.07, 개정 '11.02.28, 삭제 '11.11.25>

제35조(종합시험) 전문박사·학술박사학위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종합시험은 재학연한내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6조(응시자격) 석사과정의 졸업시험 응시자격은 전(全) 학기 학점 평균이 2.2를 초과하고, 80학점(5학기)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개정 '11.01.27, '11.02.28, '18.12.04>

제37조(응시절차 및 시기) ① 종합·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위과정생은 접수기간 내에 응시과목을 정한 후, 교무부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응시원서와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1.09.01>

② 졸업시험의 실시시기는 대학원장이 정하고 매학년도 초에 공고한다.<개정 '11.07.28,'13.06.03>

제38조(시험과목)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졸업시험과목은 전공과목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39조(출제위원) 출제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40조(합격 및 인준) ① 졸업·종합시험 각 과목별 또는 전 과목 총점의 50%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선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1.07.28, '18.12.04>

② 졸업·종합시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삭제 '11.07.28, 신설 '18.12.04>

제41조(재시험) <개정 '11.07.28, 본조삭제 '18.12.04>

제41조의2(졸업시험면제) ①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는 졸업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11.07.28>

② <삭제 '18.12.04>

제9장 학위논문

제42조(학위논문 등록)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에서 학위취득을 위한 소정의 졸업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신청서와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재학연한 이후의 논문등록) ① 전문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논문제출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재학연한 초과 후 논문지도를 받고자하는 자는 한 학기에 한하여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위청구논문신청서와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4조(학위논문) ①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학위논문은 전공분야에 대한 건실한 기본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연구 주제 및 내용이 전문성 및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② 학위논문체제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45조(제출자격) 전문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연한내에 외국어시험을 통과한 자
2.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은 자
3.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이수학점이 65학점 이상인 자<개정 '11.02.28>
4. 전 학기 평균평점이 2.0을 초과한 자<개정 '11.02.28>
5.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조(신청절차) ①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계획서는 제3학기 초 소정 기간에 교무부원장의 승인을 얻어 2부를 작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1.09.01>

② 교무부원장은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참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정한다.<개정 '21.09.01>

③ 학위논문제출신청서는 제5학기 초 소정기간에 교무부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항신설 '11.02.28, 개정 '21.09.01>

제47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전문석사학위과정의 3학기 초에 한다.<개정 '10.12.07, '11.02.28>

② 논문지도교수가 결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장기간의 질병 또는 해외여행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무부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한다.<개정 '21.09.01>

제48조(논문심사위원) ①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교내·외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논문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개정 '21.09.01>

②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을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여 논문심사위원으로 확정·위촉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고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④ 논문심사위원은 3인(위원장 1인,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⑤ 논문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무부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1.09.01>

⑥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49조(논문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제5학기에 실시할 수 있으며 학위청구논문의 결과보고서는 제6학기에 제출한다.<향신설 '11.02.28>

②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 참석 하에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필요할 경우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본,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⑤ 심사위원은 연구자의 논문이 부실하여 당해 학기 내에 완성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할 때에는 논문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50조(구술시험) 학위논문제출자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심사위원은 본심사가 완료된 후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실시한다.

2. 구술시험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으로 평가될 때 합격으로 한다.

제51조(재심사) ①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논문을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재심사 대상자는 소정의 논문지도비와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논문계획서 변경) 해당학위 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원을 제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학위기수여)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는 총장이 수여하고 교육부에 보고한다.<정부직제변경(교육부) '13.06.03>

제54조(학위구분) 석사학위과정의 학위명은 법학전문석사, 박사학위과정의 학위명은 법학전문박사(전문박사학위과정)와 법학박사(학술박사학위과정)로 구분한다.<신설 '11.01.27>

부 칙(2008.09.16)

이 시행규칙은 2009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2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0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2내지제27조7은 2011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01.2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2.28)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28)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1조의2(졸업시험면제)와 관련하여 본 조항이 발효되기 전에 시행된 시험이라도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졸업시험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부 칙(2011.11.2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3.06.03)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6.02)

이 시행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5.07.30)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04.)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진급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5.09.)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02.)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9.0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력진단평가 및 진급시험의 부득이한 불응시사유(제27조의3 관련)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불응시사유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동원소집에 응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다른 투표참가 및 국가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천재지변의 경우
시험기간 및 전후 2일 내 본인 및 자녀, 형제자매의 결혼식,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일,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장례일이 있는 경우
시험 전(후) 기간 중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질병 및 사고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행사의 참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시험에 응한 경우

【별지 1】 학력진단평가 불응시사유서

불응시사유서

소 속:
학 번:
성 명:

위 학생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학력진단평가에 응시할 수 없어 불응시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학력진단평가 불응시사유

2.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20 . .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귀 중

【별지 2】 진급시험 불응시사유서

불응시사유서

소 속:
학 번:
성 명:

위 학생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진급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불응시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학력진단평가 불응시사유

2.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20 . .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귀 중

2-5-3.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2008. 09. 16

개정 2021. 09.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 학칙에서 위임한 학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업관리 및 수강신청

제2조(수업시간편성) 수업시간은 교무부원장의 책임하에 편성하며,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개정 ‘10.12.07, ‘21.09.01>

제3조(수업시간변경) 편성된 수업시간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장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수업확인) ① 교과목 담당교원은 당일 수업을 종료한 후 교학과에 비치된 수업확인서에 날인하여야 한다.<직제변경 ‘15.06.04.>

② 교학과장은 당일 수업확인 후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직제변경 ‘15.06.04.>

제5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21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항신설 ‘11.07.28, 개정 ‘18.12.04>

③ 학생의 매 학기 수강기준학점은 17~21학점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학점인정을 받은 자는 13~21학점으로 한다.<단서신설 ‘09.5.27, 개정 ‘18.12.04>

④ 학생은 매 학기 교과이수에 관하여 수강신청 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前)학기 “수업평가”와 소정의 “인성검사”를 반드시 필해야 한다.

⑥ 수강신청은 본인의 책임하에 교내 전산망에 게시된 수업계획서를 열람하고 수강과목과 해당사항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⑦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과목의 성적은 전부 F로 처리한다.

⑧ 수강신청시 수강과목 전산입력 오류로 발생하는 책임은 학생이 진다.

⑨ 수강신청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⑩ 매 학기 실시되는 수업평가와 인성검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수강신청 교과목의 확인 및 변경) ①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학생본인은 수강신청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과목의 변경은 제1항의 변경기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임의로 변경한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다만, 폐강 등 부득이한 경우 학생이 과목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지정된 기간에 변경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강신청 변경기간이 끝난 후 복학한 자는 수강신청 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

제7조(수강신청 교과목 취소) ① 개강 후 6주 이내에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 교과목 내에서 승인을 받아 취소할 수 있으나, 당해학기 수강학점이 6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강신청 교과목 중 취소 교과목으로 승인된 교과목은 당해학기 수강학점에서 삭제하나 임의로

취소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하고 학점수는 당해학기 성적 평균평점에 계산한다.

③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과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다.

④ 수강신청 취소로 인하여 당해학기 수강기준 학점이 미달되면 장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교과목의 재수강) ① 모든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학기당 이수학점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고, 재수강 신청 교과목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학업성적이 C+이하(P/F평가의 경우 F포함)인 교과목에 한한다.<개정 '11.02.28, '14.12.24>

② 재수강 인정기준은 동일교과목 및 동일학수번호 또는 재수강으로 인정된 유사 및 대체과목으로 한다.

③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을 당해 교과목의 성적으로 하되, 재수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의 최고 등급은 B+로 한다.<항신설 '13.06.03>,<개정 '14.12.24>

④ 재수강으로 인한 학점의 취득은 이미 행한 성적 경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항신설 '13.06.03>

제3장 교과과정

제9조(교과과정 편성원칙) ① 교과과정은 학칙 제17조에 의하여 편성하며 그 개편은 필요할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이론강의 교과목은 1학점당 1시간을 원칙으로 편성하며, 필요에 따라 학점 당 2시간 단위로 편성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정규교과과정 이외 비정규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1.07.28>

④ 전공학점 개설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교과과정 변경의 효력) ① 개정된 교과과정은 개정 공포일로부터 전 학년에 적용 시행한다.

② 필수과목(실무수습 및 전공필수)은 재학 기간 중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과과정의 개정으로 전공필수과목이 전공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이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1.02.28>

제4장 출석과 결석

제11조(출석) ① 교과목 수업담당교수는 매 시간 학습자의 출석점검과 학생의 수업시 태도 또는 수업관리내용을 기록한다.

② 교과목 수업담당교수는 각 교과목의 매 학기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에 미달한 학생을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된 학생은 해당 학기 교과목에 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2조(출석부) 교과목 수업담당교수는 학기말 학습평가 내용과 출석부를 교학과에 제출한다.<직제변경 '15.06.04.>

제13조(지각·조퇴) ①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시간으로 처리한다.

② 결석 1시간에 대한 감점은 교과목 성적 100점 만점 기준으로 2점 이내에서 교과목 담당교수가 결정하고 반영비율은 수업계획서에 명시한다.<항신설 '10.12.07>

제14조(행사불참자) 총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승인한 학교행사의 불참은 해당요일 해당시간을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15조(공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자는 공결로 처리하여 출석으로 인정하며, 공결 또는 행사로 인하여 결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의 서류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직제변경

‘15.06.04.>

1.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은 1주 인정한다.
2. 병사관계(신체검사)로 인한 결석은 병무청 통지서가 있을 때에 한하여 3일간 인정한다.
3. 졸업여행의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통보한 명단과 일자에 의하여 인정한다.
4. 학교대표로 대외행사에 참가하는 학생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한다.
5. 소정의 승인을 받아 학술답사 및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자는 참가자 명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6.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은 1주 인정한다.
7. 가정에 큰 참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1주 인정한다.
8. 수술 또는 중병으로 입원한 자는 병(의)원장의 진단서에 의하여 2주까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9. 생리로 인한 수업의 결석은 월 1회 인정한다.

- 제16조(출·결석확인)** ① 교원(강사 포함)은 출·결석 여부를 출석부에 기록·관리하고, 매 학기 중간 및 기말고사 전에 출석미달 학생에게 시험 응시자격이 없음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07.25.>
- ② 교무부원장은 전항에 의한 출결사항을 확인하여 출석미달인 학생을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0.12.07, ‘21.09.01>
- ③ 소정의 기간까지 수업진행기록부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수업진행기록부에 성적표기가 없는 경우는 F학점으로 처리한다.

제5장 휴·보강관리

제17조(주중행사 금지) 교원(강사 포함)과 학생의 주중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보강계획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사전공지한 후 실시한다.<개정 ‘19.07.25.>

제18조(휴강) ① 교원(강사 포함)이 휴강하는 경우에는 본교 홈페이지 학사프로그램의 휴·보강 관리메뉴에 접속하여 휴강공지 및 그에 따른 보강계획을 입력하고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07.25.>

② 휴·보강관리대장은 교학과에 비치하며 교무부원장이 관리한다.<개정 ‘10.12.07, ‘21.09.01 직제변경 ‘15.06.04.>

제19조(보강기간) 공휴일로 인해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말 1주를 연장하고 수업보강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제6장 수업관리 및 수업평가

제20조(수업계획서) ① 교원(강사 포함)은 담당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본교 홈페이지 학사프로그램에 매 학기 시작일 4주전까지 게시하여, 학생의 수강신청과 수업참여 등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19.07.25.>

② 학생은 본교 홈페이지 학사프로그램에 등재된 수업계획서를 수시로 열람하여 수업내용, 수업방법과 주별 수업계획에 따라 수업을 준비하며 이에 대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상황은 학생 본인이 책임진다.

제21조(수업평가지원) ① 수업평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교무부원장과 교학과에서 한다.<개정 ‘10.12.07, ‘21.09.01 직제변경 ‘15.06.04.>

② 교무부원장은 수업평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0.12.07, ‘21.09.01>

③ 수업평가시스템 및 평가문항개발 등은 자체평가위원회 내의 수업평가분과위원회가 담당한다.

제22조(수업평가의 시기와 방법) ① 수업평가는 매학기 14주째부터 실시한다.

② 수업평가는 본교 홈페이지 학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23조(수업평가 결과분석) ① 수업평가에 대한 결과분석은 자체평가위원회내의 수업평가분과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수업평가분석은 교수개인별, 법학전문대학원 전체별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교원과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피드백 함으로써 교과내용과 방법의 개선을 도모한다.

③ 교원(강사 포함)은 수업평가에 대한 결과를 수업준비 및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반영여부 정도를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07.25.>

제24조(수업평가반영) ① 수업평가는 교수업적과 승진에 반영하며, 매년 수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수업우수교원상을 수여한다.

② 수업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3.0 미만의 평가를 받은 교원(강사 포함)은 일정기간 동안 강의의 제한을 받는다.<개정 '19.07.25.>

③ 제2항의 교원(강사 포함)은 교수개발센터의 '수업방법개선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개정 '19.07.25.>

제25조(수업평가 내용 및 방법 개선)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수업평가 내용과 방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학생참여) ① 학생은 본교 홈페이지 학사프로그램에 게재된 수업평가 문항에 대하여 기간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업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업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성적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학점 및 성적평가

제27조(학점의 규정) 학점은 교과목의 이수 단위이며 1주 1시간씩 15주 수업량을 단위로 하여 이를 1 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9.02.>

제28조(성적의 기재) ①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등급과 평점으로 표시한다.<표개정 '11.02.28.>

등급	A+	A0	A-	B+	B0	B-	C+	C0	C-	D+	F	P	NP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0		

② 학적부는 등급으로 기재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학점 없이 합격한 자에게는 P(Pass)로 기재한다.
2. 졸업학위논문은 학점 없이 P(Pass)로 기재한다.<개정 '11.02.28.>
3. <호 삭제 '20.09.03.>

③ 성적 평균평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

1. 평점 합계가 많은 자
2. 신청 학점수가 많은 자

제29조(교과목의 성적평가 방법) ① 각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정기시험 성적과 수시평가, 과제, 발표·토론, 수업태도, 출석 등을 고려하여 100점 만점으로 종합 평가한다.<개정 '11.07.28.>

② 정기시험에 결시하는 자는 해당과목의 당해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F로 처리한다.

③ 계절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다음 학기 성적에 포함하여 산정한다.<항신설 '14.09.05.>

④ 교원(강사 포함)은 매 학기말 성적입력기간 종료시 성적단표를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신설 '14.09.05><개정 '19.07.25.>

제30조(필수 교과목의 성적평가) ① 필수 교과목 성적은 다음과 같은 성적분포에 따라 배점하며 아래의 성적분포는 각 학점별 최대 비율이다.<개정 '09.5.27, 단서삭제 '10.12.07, 표개정 '11.02.28, 조목,본문, 표개정 '14.09.05>

기본등급별 비율	세부등급별 비율	비고
A : 25%	A+ : 7%, A0 : 8%, A- : 10%	A, B 합계 : 75% A, B, C 합계 : 96~100%
B : 50%	B+ : 15%, B0 : 20%, B- : 15%	
C : 21~25%	C+ : 9%, C0 : 7%, C- : 5~9%	
D : 0~4%	D+ : 0~4%	

② 각 등급별 해당비율에 의거하여 계산된 인원이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단, 세부등급의 비율(+,0-)을 적용한 인원의 합이 각 기본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기본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세부등급 비율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부등급의 마지막(-)에서 초과인원만큼 사용할 수 있다.<항신설 '11.02.28>

③ 제1항에서 최대비율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서 반올림함으로 인하여, 기본등급별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상위기본등급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비율만큼 하위기본등급에서 사용할 수 있고, 상위 기본등급에서 초과하여 사용한 비율만큼 차하위기본등급에서 공제한다.<항신설 '11.02.28>

④ 수강생의 수가 9명 이하의 과목인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상대평가한다. 이 경우 동일 성적 등급 내의 +(상), 0(중), -(하)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할 수 있다. 단, 상위기본등급에서 규정된 최대인원을 소진하여 배점하지 않은 경우 하위기본등급에서 소진되지 않은 인원만큼 초과하여 배점될 수 있다.<항신설 '11.02.28>

기본등급/세부등급 수강인원	A	B	C	D
	A+, AO, A-	B+, BO, B-	C+, CO, C-	D+
9명	2	5	2	
8명	2	4	2	
7명	2	4	1	
6명	2	3	1	
5명	1	3	1	
4명	1	2	1	
3명	1	1	1	
2명	1	1		
1명	1			

⑤ <항신설 '11.02.28, 삭제 '11.07.28>

⑥ 학칙 제20조의 필수교과목은 합격/불합격으로 평가한다. 단, 법문서작성은 제30조에 따라 성적을 평가한다.<항신설 '11.02.28, 개정 '11.11.25, '12.02.28, '20.09.02>

⑦ <항신설 '11.02.28, 항삭제 '14.09.05>

⑧ <항삭제 '14.09.05>

제30조의 2(선택 교과목의 성적평가) ① 선택 교과목의 성적은 다음과 같은 성적분포에 따라 배점하되, 각 등급의 +, 0, -의 각 세부등급별 비율은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정한다.

등급	A	B	C	D
비율(%)	25 ~ 35	35 ~ 50	15 ~ 40	0 ~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과목 및 수강생이 6명 이하인 과목에 대해서는 위 등급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수강생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A등급이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강생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A등급의 성적은 1명까지만 부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14.09.05> <개정 '20.09.02>

제30조의 3(성적분포기준의 특례) 제30조 및 제30조의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로 성적분포를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02>

제31조(취득성적의 포기) <삭제 '12.12.24>

제32조(학기우등생) 제1학기에서 제6학기까지는 한 학기에 수강한 교과목이 수강 기준학점 이상이고 F 학점이 없는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학적부에 기재한다.<개정 '11.07.28>

1. 최우등생 :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4.0 이상인 자
2. 우 등 생 :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5 이상인 자<개정 '11.07.28>

제33조(추가시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증빙서류를 교학과에 제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직제변경 '15.06.04.>

제34조(재시험) 교원(강사 포함)은 필요에 따라 정기시험 성적이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학생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07.25.>

제35조(조기시험) 중간시험에 응시한 후 과목별로 당해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한 학생으로서, 군입대 또는 출산 및 질병(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에 의하여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조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6조(휴학자의 성적처리) 학기도중 휴학한 자의 수강과목은 휴학과 동시에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기말고사 기간 중이라도 학년의 기말시험 종료 후 휴학한 자는 해당학기를 수강한 것으로 본다.

제37조(과제물) ① 교원(강사 포함)은 과제물을 엄정하게 점검하여 학생들에게 피드백 해 줌으로써 과제물 평가와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07.25.>

- ② 과제물을 표절한 경우 과제점수는 0점 처리하고 담당교수의 명의로 경고조치하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수강과목에 대해 F처리한다.

제8장 성적 및 졸업이의신청 <개정 '10.12.07>

제38조(이의신청) ① 공시된 교과목 성적, 진급시험 성적(사정), 졸업사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음 소정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교학과에 제출한다. 이의신청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심의기구에서 심의한다.<개정 '10.12.07, '20.09.02 직제변경 '15.06.04.>

- ②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9.02>

1. 교과목 성적 및 진급시험 성적(사정)에 대하여는 성적공시일로부터 5일 이내<개정 '11.07.28, '20.09.03>

2. 졸업사정의 결과에 대하여는 사정결과 공시일로부터 7일 이내<개정 '20.09.02>

제39조(성적의 정정) ① 일단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1.07.28>

- ② 성적의 정정은 그 착오의 원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교수의 평가와 기재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2. 사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3. 기타 착오 발생의 원인이 학생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 ③ 과목 담당교수는 제38조에서 정한 성적 이의신청기간에 제기된 학생의 성적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원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11.07.28>

- ④ <삭제 '13.06.03>

제9장 졸업요건

제40조(졸업요건)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19조에 따라 졸업사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등록기간 : 6학기 이상
2. 이수학점 : 92학점<개정 '18.12.04>
3. 필수교과목 : 학칙 제20조, 제21조에 따른 교과목 이수
4. 졸업시험 : 합격/불합격 <개정 '11.11.25>

제10장 제적 및 유급

제41조(성적사정) ① 성적(유급) 및 진급사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한다.

- ② 사정시기는 학기말 및 학년말로 정한다.
- ③ 사정일람표는 성적사정이 끝난 후 교학과에서 보관한다.<직제변경 '15.06.04.>

제42조(일반유급) ① 재학기간 중 학생이 원하는 경우 유급할 수 있다.

- ② 유급을 원하는 자는 유급신청서를 교무부원장에게 제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1.07.28, '21.09.01>
- ③ 유급 신청기간은 매 학기 초 4주 이내로 한다. 다만 유급신청자가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사정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 ④ 유급된 학년에 취득한 B0(3.0)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한다.<개정 '11.02.28>

제43조(성적유급) 성적유급에는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1.02.28>

제43조의2(진급시험 불합격에 따른 유급) 진급시험 불합격에 따른 유급에는 제4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18.12.04>

제11장 휴학, 복학, 재입학

제44조(휴학) ①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와 등록을 마친 후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자는 휴학할 수 있다.

- ② 군입대, 질병 또는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한 휴학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휴학할 수 있다.

제45조(휴학시기) ①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경우 학기 초 4주 이내에 휴학할 수 있다.

- ②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휴학을 할 수 있다.

제46조(휴학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사유서(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대학부속병원장 및 종합병원장의 4주 이상 진단서 첨부)를 첨부한 휴학원을 교무부원장을 경유하여 교학과에 제출하고 확인증을 교부 받는다.<직제변경 '15.06.04, 개정 '21.09.01>

제47조(군입대휴학) ① 재학 또는 가사휴학 중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입영명령서 사본 1매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입영하여야 한다.

- ②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특례보충역)요원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병무청 지정 특례업체에서 근무가 확정된 자는 지방 병무청에서 발행하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에 사본 1매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기말고사 이후 휴학자) 기말고사 이후 휴학자는 당해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하며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평점계산, 학사경고, 유급, 제적, 장학생 선발 등에 반영한다.<개정 '11.07.28>

제49조(복학) ①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종강 후부터 개강 후 4주 이내에 복학원을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직제변경 '15.06.04.>

② 군입대 휴학 후 4주 이내에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하고, 4주 이후에 귀향 조치된 자는 가사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 군전역으로 인한 복학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학하되 전역 전이라도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소속부대장(공익요원은 소속 기관장)의 휴가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복학을 허용한다.

제50조(재입학) ① 매 학기 등록기간 전에 재입학원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재입학 승인을 받는다. 다만,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이수한 학기 이하로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직제변경 '15.06.04.>

② 재입학이 승인된 자는 재입학금과, 해당 학년과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한다.

부 칙(2008.09.16)

이 시행규칙은 2009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0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2.28)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1년 2월 28일 이전에 이수한 방학 중 인턴쉽은 해당기관이 발급한 이수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습과정(리걸클리닉, 실무수습)중 실무수습으로 인정하여 이 시행규칙의 해당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부 칙(2011.11.2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2.02.28)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4)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3)

이 시행규칙은 2013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9.0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4)

이 시행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04)

이 시행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7.25)

이 시행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02)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9.0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2008. 09. 16

개정 2018. 12. 04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 학칙 제22조 및 제40조에 규정된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점인정 대상)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동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학점인정의 대상을 다음 각 호로 정한다.<개정 '11.07.28>

1.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3. 외국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
- ② 기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 ③ 제1항과 제2항의 자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18.12.04>
- ④ 제3항 소정의 시험에 대한 세부기준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신설 '18.12.04>

제3조(학점인정 범위) ① 학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학사 학위취득자의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법학과목 65학점 이상 이수자 : 10학점
 2. 법학과목 55학점 이상 이수자 : 8학점
 3. 법학과목 45학점 이상 이수자 : 6학점
 4.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 : 4학점
- ② 학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학석사와 법학박사는 15학점을 인정한다.
- ③ 학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경우에는 학사 6학점, 석·박사 10학점을 인정한다.
- ④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학위별 총 평균평점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⑤ 학점인정을 받은 자라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 필수 교과목은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09.5.27>
- ⑥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입학생의 인정학점은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보며, 일괄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은 평균평점 환산시에 포함되지 않고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된다.<신설 '09.5.27>

제4조(학점인정 절차) ① 학칙 제22조, 제40조에 의한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수인정신청서(졸업·성적증명서 첨부)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직제변경 '15.06.04.>

②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소정의 시험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전조의 사항을 상정한다.<신설 '18.12.04>

③ 법학전문대학원위원회는 인정교과목과 학점을 심의·결정한다.

제5조(교류학생 이수학점 인정) 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재학기간에 한하여 국내·외의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과목에 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당 6학점, 통산 12학점까지 인정한다.<개정 '11.07.28>

② 학술교류를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에 파견된 기간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교류학생 수강신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국내·외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 등록기간 내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교류학생 성적인정) 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국내·외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성적이 A·B·C일 경우에 각각 A·B·C로 정리하고 취득성적이 D 이하일 경우에는 F로 처리한다.

② 기타 교류학생의 성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한다.

제8조(교류학생의 성적표제출) 국내·외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을 원하는 재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에 성적표를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직제변경 '15.06.04.>

제9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이 시행규칙에 의하여 학점인정이 승인된 재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8.09.16)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2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28)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04)

이 시행규칙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5-5.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09. 16

개정 2019. 05. 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학정신과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이 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교 장학금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장학위원회)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이하 “장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학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하는 본교 교직원과 동문 및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은 6인 이내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된다.<개정 '13.06.03>

③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종류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4. 장학생 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항

제4조(교내장학금)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내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개정 '19.05.09.>

1. 복지장학금 : 경제적 배려 대상자
2. 봉황법학 장학금(신입우수장학금) : 신입학 전형 성적우수자
3. 성적 장학금 :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
4. 교직원직계자녀 장학금 : 본교 및 부속기관(대학병원 제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 및 학교 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
5. 근로장학금 : 본 대학원에서 정하는 근로를 한 자
6. 일반 장학금 :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교내장학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장학종류의 추가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가 정한다.<항 신설 '19.05.09.>

제5조(교외장학금) ① 교외장학금이라 함은 교외 기관, 각종 장학단체, 개인 등의 외부인이 그 보유재원에 따라 직접 선발하거나 선발을 위탁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취약계층에게 국고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한다.<개정 '19.05.09.>

② 교외 기관,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금을 기탁하여 장학 내용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제시요건에 따라 지급하며 그 외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19.05.09.>

제6조(선발자격) <본조삭제 '19.05.08>

제7조(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11.02.28>

1. 재입학자
2.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3. 직전(直前)학기 수강 교과목 수업(강의)평가 미참여자, 비정규교육프로그램 미이수자<개정 '11.02.28>
4.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6장 학력진단평가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설 '11.02.28, 개정 '11.07.28>
5. 휴학자<개정 '19.05.09.>
6. 직전(直前)학기 학사경고자 및 유급자<신설 '19.05.09.>
7. 신입생이 아닌 자로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기준학점에 미달한 자<신설 '19.05.09.>
8.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자<신설 '19.05.09.>

제8조(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대상자 선정)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신청을 해야 하며, 소정의 장학금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혼자인 경우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판정 결과 외에 별도의 소득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서류(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05.09.>

② 장학위원회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의하여 복지장학금 및 국가장학금의 지급대상자를 정한다. 다만, 기혼자의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자료 외에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판단한다. <신설 '19.05.09.>

③ 취약계층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교육부의 지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신설 '19.05.09.>

제9조(장학생 선정기준) <본조삭제 '19.05.08>

제10조(장학생 배정) 장학금지급인원 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년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추천 및 확정) ① 교무부원장은 장학금수혜후보자를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1.09.01>

② 장학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제출한 장학금수혜후보자에 대한 성적 및 해당사항들을 심의하여 장학생을 결정한다.

제12조(장학생 명단작성 및 공고) 교무부원장은 확정된 명단을 작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장학금수혜자 명단과 장학금 지급내역 등을 해당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비치한다.<개정 '11.07.28, '21.09.01>

제13조(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의 지급결정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14조(지급방법)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그 명부를 작성하고,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장학증서를 학생에게 수여한다.

② 장학금 수혜대상자로 확정되었으나 군입대 등 휴학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복학한 학기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5조(장학증서 현금화 방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증서는 등록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며 현금으로 상환 받을 수 없다.

제16조(지급결과보고)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기탁자에게 통보한다.

제17조(이중수혜금지) ① 각종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의 일반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특정 목적의 교외장학금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중지급할 수 있다.<단서신설 '10.12.07, 개정 '15.06.04., 개정 '19.05.0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1인이 2종 이상의 수혜대상자로 선발될 경우에는 본인이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다.<개정 '10.12.07>

제18조(장학금의 반환)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거나 본 규정에 반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05.09.>

제19조 <본조삭제 '19.05.08.>

부 칙(2008.09.16)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2.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9.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6.0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7.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0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9.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도교수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명 변경 '21.09.01>

제정 2009. 05. 27.

개정 2021. 09. 01.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본 법학전문대학원학칙 제50조 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1.09.01>

제2조(지도교수 자격) 석·박사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의 전임교원으로 하고 대학원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복수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11.07.28, '21.09.01>

제2조의2(지도교수의 유형) ① 석사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평생지도교수와 논문지도교수로 구분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평생지도교수와 논문지도교수를 겸한다.<조신설 '11.07.28, '21.09.01>

제3조(지도교수 배정시기) ① 석사학위과정의 평생지도교수는 1학년 2학기 초에 학생의 신청과 학생부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배정한다.<개정 '11.07.28, '21.09.01>

② 석사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와 박사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입학 후에 학생의 신청과 교무부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배정한다.<신설 '11.07.28, 개정 '21.09.01>

제4조(지도교수의 직무) ① 석사학위과정의 평생지도교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수강신청 지도, 학습, 취업 및 진로, 적성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도, 학위청구논문 및 연구, 실습지도, 졸업시험 등을 지도한다.<개정 '11.07.28>

② 석사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 및 학술논문작성 등을 지도한다.<항신설 '11.07.28>

③ 박사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지도한다.<항신설 '11.07.28>

제5조(지도교수의 변경) ① 위촉된 석사학위과정의 평생지도교수가 질병, 휴직 또는 국내·외 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어려울 때에 한하여 학생부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개정 '11.07.28, '21.09.01>

② 석사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와 박사학위과정의 지도교수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부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항신설 '11.07.28, 개정 '21.09.01>

제6조(지도비) 석사학위과정의 평생지도교수의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학생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1.09.01>

제7조(주임교수 자격 및 임기) <삭제 '21.09.01>

제8조(주임교수 임명) <개정 '11.07.28><삭제 '21.09.01>

제9조(주임교수의 직무) <삭제 '21.09.01>

부 칙(2009.05.27)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제정이전에 임명된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임기는 이 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07.28)

이 시행규칙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9.0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체제에 관한 내규

제정 2011. 01. 27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28조 및 학칙시행규칙 8장 학위논문에 관련된 학위논문 체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작성) 심사용 학위청구 논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700자 원고지 또는 Word Processor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3. 국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외국어 초록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제출)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다음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3부
2. 박사학위과정 : 5부

제4조(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 심사용 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음을 주심이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보고한 후 논문제출자는 학위논문을 작성 제출한다.

제5조(학위논문 제출부수) 학위논문심사 통과자는 학위논문을 다음과 같이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드 본 : 석·박사과정 - 2부(법학전문대학원)
2. 소프트 본 : 석·박사과정 - 5부, 학위청구논문이 입력된 디스켓 2매(도서관 운영관리과)<직제 변경 '15.06.04.>

제6조(학위논문심사위원 서명날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하는 학위논문 하드 본 2부는 학위논문심사위원 전원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학위논문 구비사항) 학위논문에는 다음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

1. 표 지
2. 내 지
 - 가. 대표지
 - 나. 인준지
3. 본 문
 - 가. 목 차
 - 나. 그림 및 표 목차
 - 다. 국문 및 외국어 초록
 - 라. 본문내용
 - 마. 참고문헌목록
 - 바. 부록, 색인, 기타

제8조(학위논문규격 및 본문형식) 학위논문규격 및 본문형식은 별표 1의 학위청구논문 작성지에 의한다.

제9조(참고문헌의 기재방법) 일반논문 작성요령에 의한다.

부 칙(2011.0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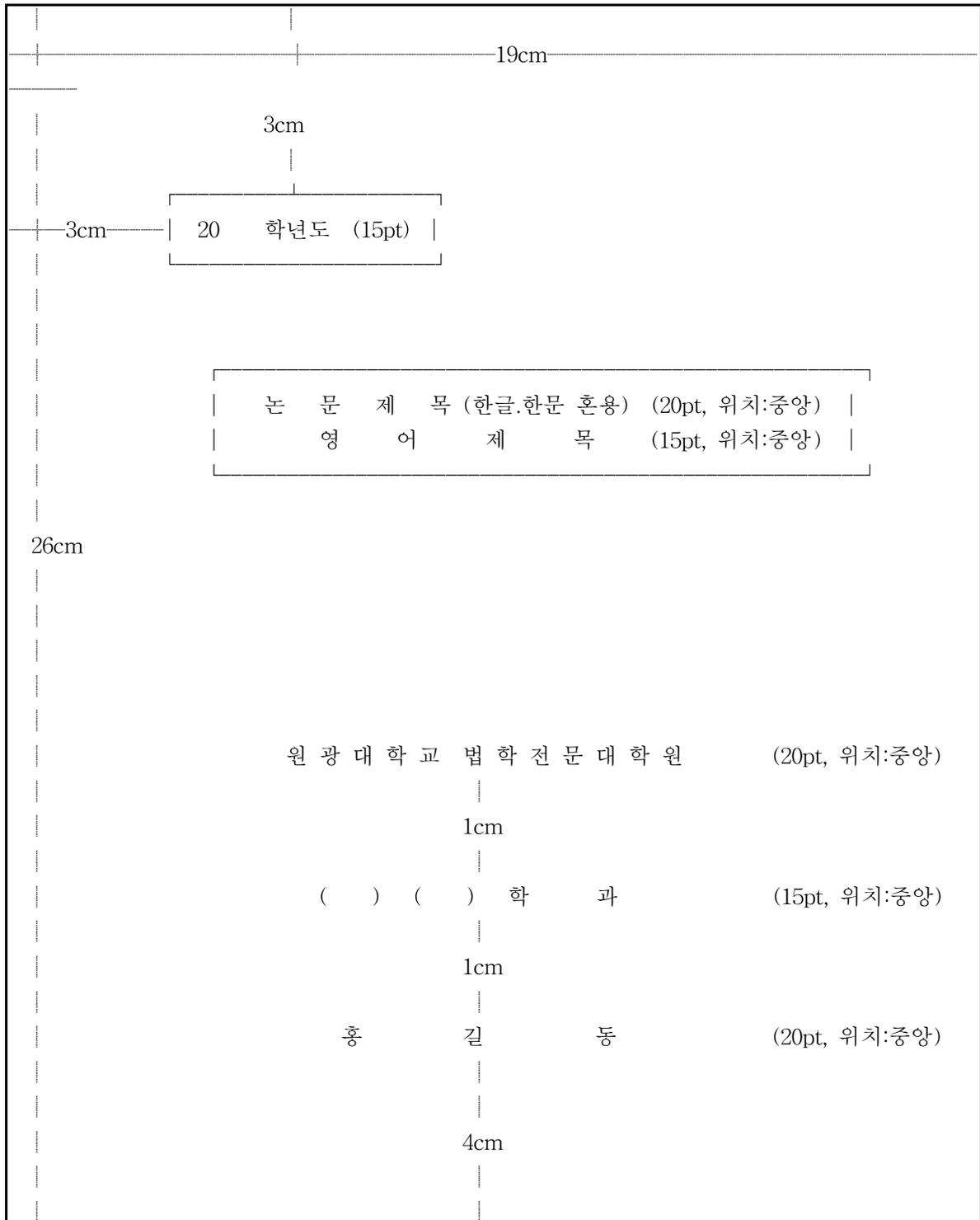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위청구논문 작성지침(표지인쇄 및 내용)

1. 규격 : 4.6배판 (가로19cm × 세로26cm)
2. 지질 : 모조지, 70파운드(70g/m) 이상
3. 인쇄방식
 - 가. 양면 또는 단면으로 인쇄한다.
 - 나. 글자크기는 장은 15pt, 절은 13pt, 소제목은 12pt, 본문은 11pt, 주는 10pt로 한다.
4. 표지색깔 및 형식
 - 가. 하드 카바 : 석사학위논문 - 짙은 검색(곤색)표지에 은색활자.
박사학위논문 - 흑색표지에 금색활자.
 - 나. 소프트 카바 : 석·박사 공히 회색 레자크 200g이상으로 한다.
5. 제본형식 : 포클로스 양장.
6. 표제인쇄 : 도해 #1에 따르되 명조체 20pt로 한다.
7. 학위논문의 체제와 순서
 - 가. 표지(도해 1)
 - 나. 내지
 - (1) 내표지(도해 2) (2) 인준지(도해 3)
 - 다. 본문
 - (1) 목차(도해 4)
 - (2) 그림 및 표 목차
 - (3) 국문 또는 영문초록(국문일 경우 영문으로, 외국어인 경우 국문으로 요약)
 - (4) 본문내용(도해 5)
 - (5) 참고문헌 목록(세밀히)
 - (6)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에만)
 - 라. 등표지(도해 6)
8. 학위논문 본문형식
 - 가. 목차의 세분은 장, 절, 항 등으로 하며, 기호는 I, 1, 가, (1), (가), 1, 가)등의 순으로 한다.
 - 나. 도 및 표 목차 : 표기순서는 수표, 도표의 순서로 하고 표1, 표2 및 도1, 도2와 같이 표시한다.
 - 다. 본문내용 : 본문내용은 다음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서론 (2) 본론 (3) 결론
 - 라. 각주 : 각주는 일련번호를 붙이고 해당 면 밑, 장 후면 또는 논문말미에 종합 기재한다.
 - 마. 부록 : 부록은 부록이라 쓴 백색 별지를 붙인다.
 - 바. 참고문헌 : 논문작성에 이용한 국내외 서적, 논문, 기타의 순으로 그리고 가, 나, 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9. 석·박사 논문 제출자는 심사에 통과된 논문을 논문작성지침에 의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10. 인쇄완성 본 논문을 석·박사 공히 하드 본 2부는 심사위원 실인을 받아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에, 소프트 본 5부 및 논문수록 디스켓 1장을 도서관 운영관리팀에 제출하고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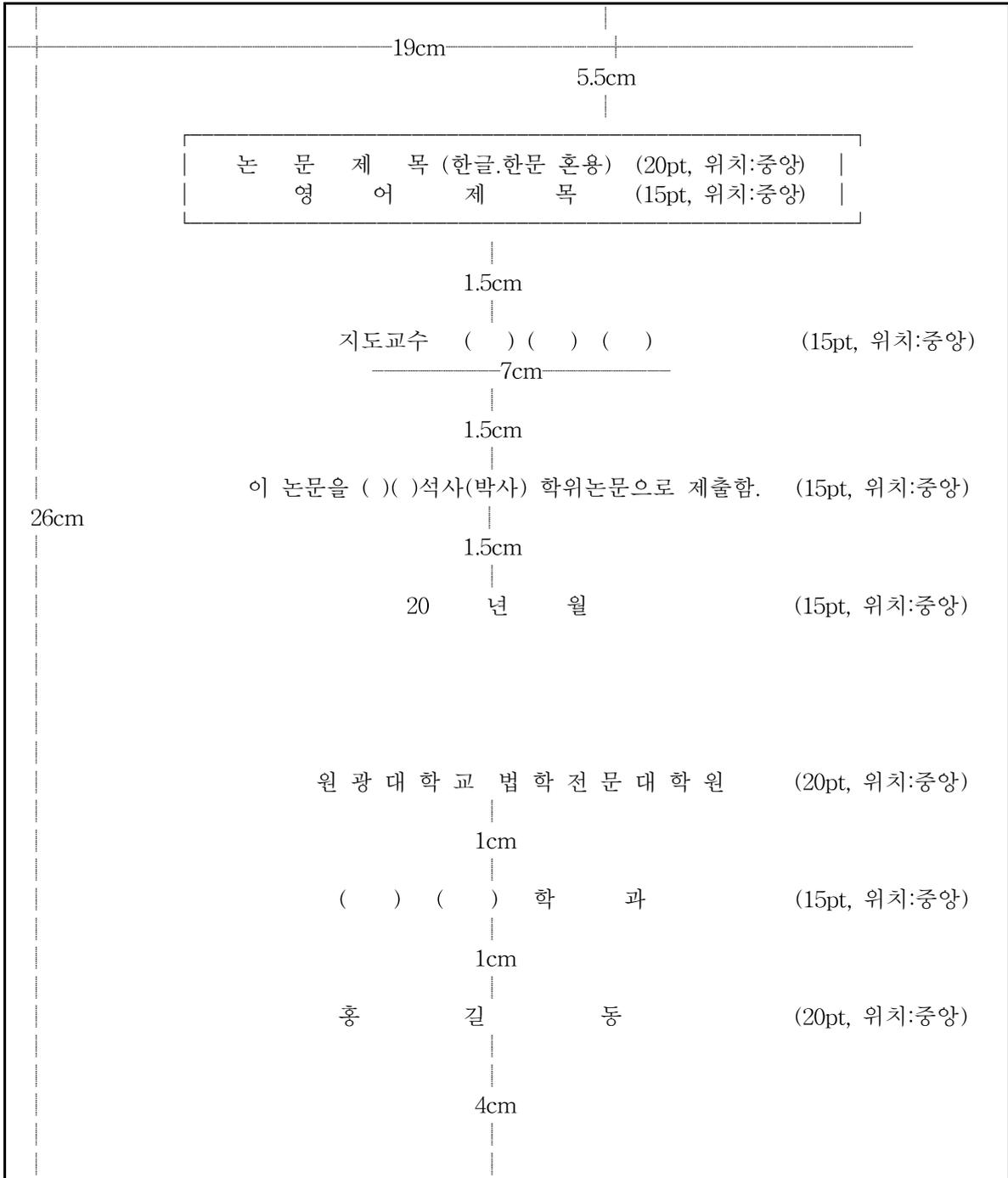
【도해 1】

내 표지 인쇄 및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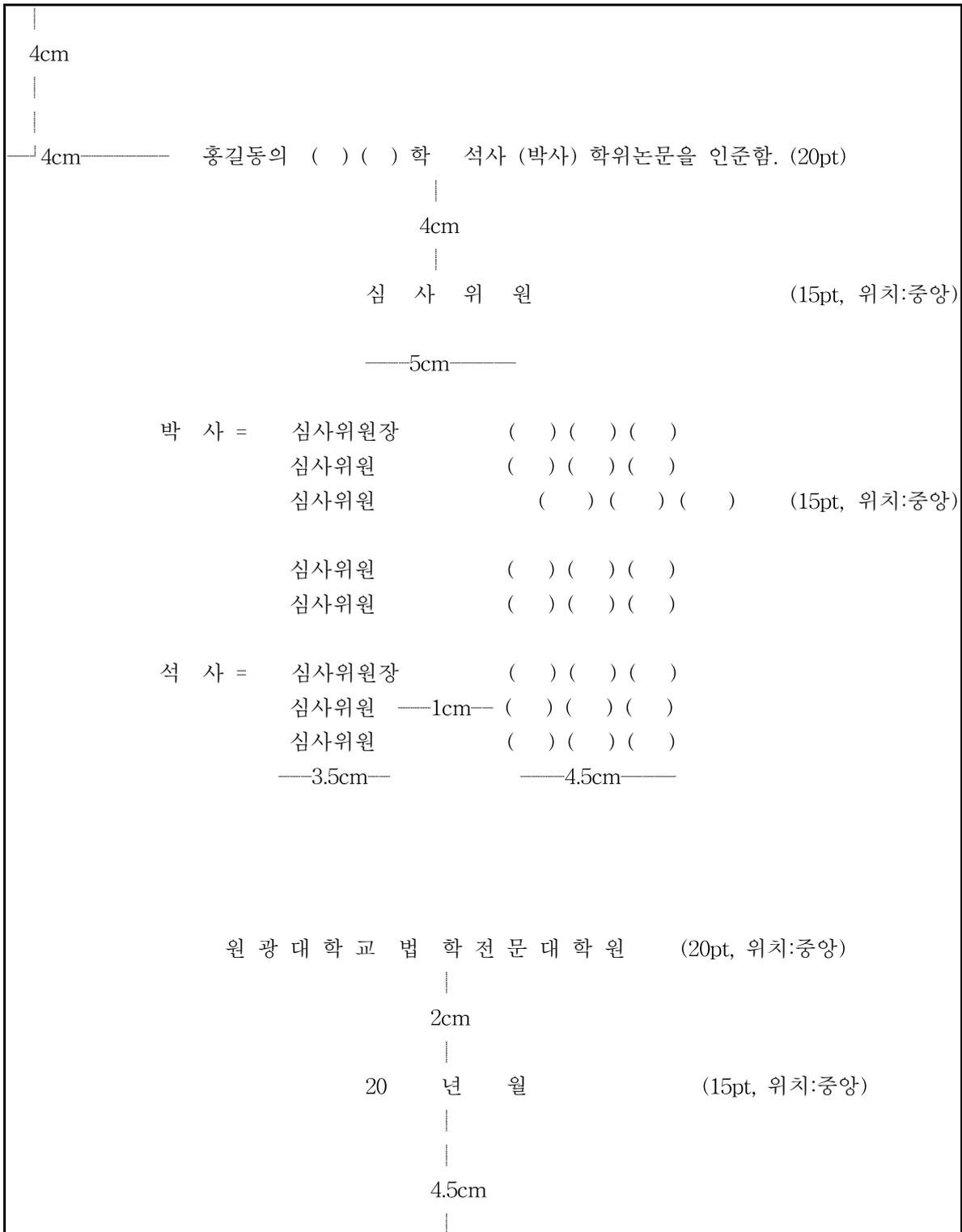
【도해 2】

내 표지 인쇄 및 규격



【도해 3】

인준서 인쇄 및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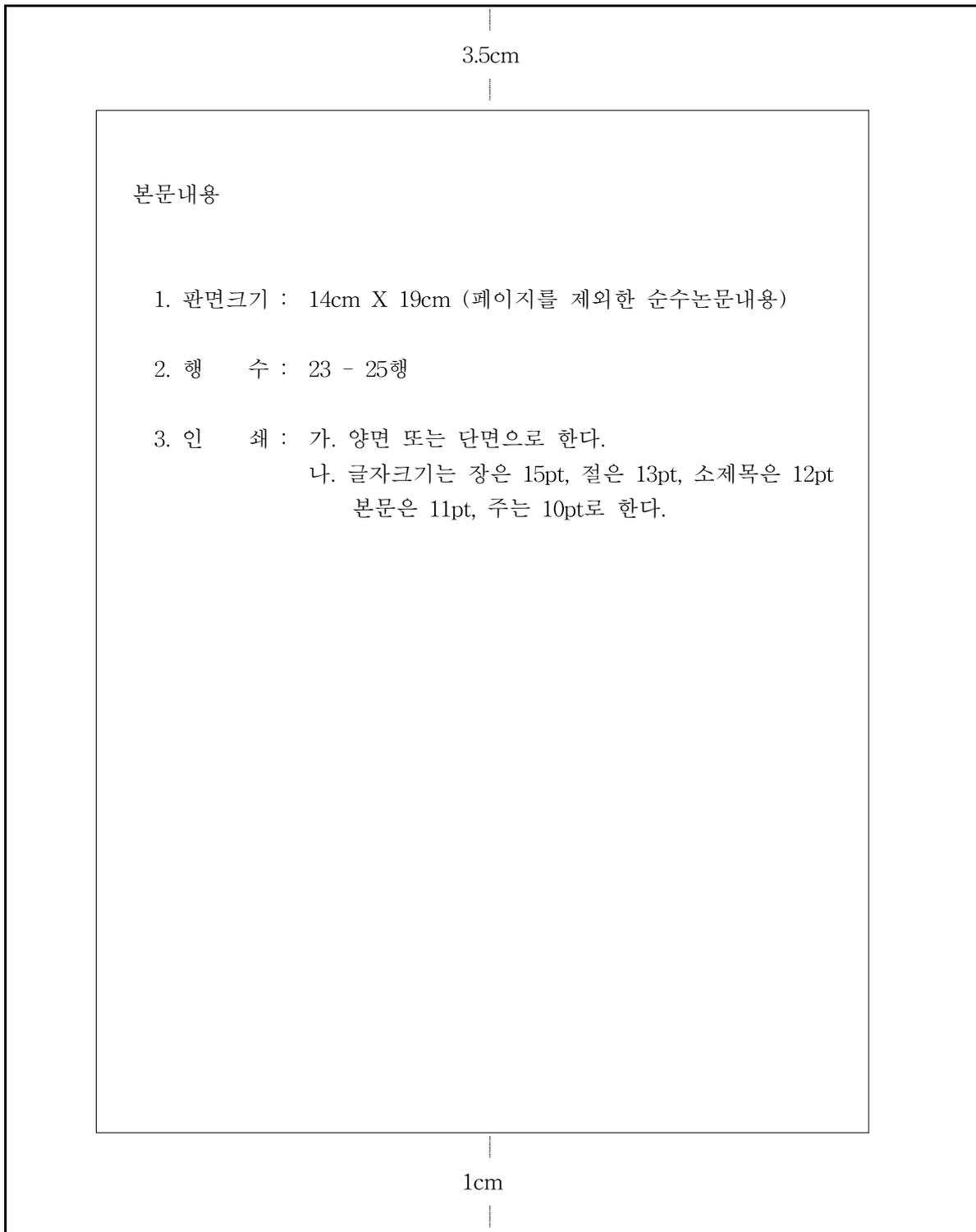
【도해 4】

목차 인쇄 및 규격

3cm		
	목 차	(위치:중앙)
	-----4cm-----	
국문 및 영문 요약	-----	0
서 론	-----	0
제 1 장	-----	0
제 1 절	-----	0
제 2 절	-----	0
	-----	0
	-----	0
	-----	0
	-----	0
	-----	0
	-----	0
	-----	0
	-----	0
결 론	-----	0
참고문헌	-----	0
부 록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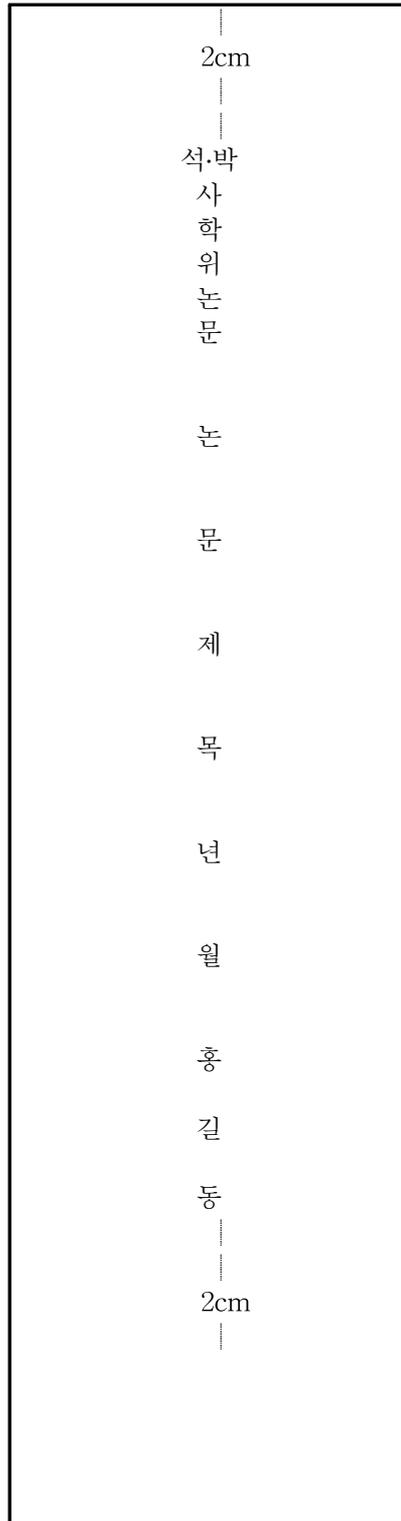
【도해 5】

본문 인쇄 및 규격



【도해 6】

등표지 인쇄 및 규격



□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53조(학위기수여) 관련
학위기 서식

【제1호 서식】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 이수하여 법학전문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0 0박사 000	직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법학전문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원 광 대 학 교 총 장 0 0 박 사 0 0 0	직 인
학위번호 : 원광대 2000 (석) 0000	